

“
차별과
불평등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로
”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 ①

“
차별과 불평등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로
”

● 20대 대선, 시민사회 제안 생명안전 10대 과제 | 7

● 생명·안전사회 기본 원칙 | 8

● 여는 말씀 : 김훈 작가 | 10

● 인사 말씀 : 김미숙 | 김용균재단 대표 | 12

김종기 |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13

양경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15

● 발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 :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18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피해자 권리 보장 : 오지원 | 생명안전 시민넷 법률위 위원장 | 44

감염병 재난 대응 및 공공의료 체계 확충 : 전진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53

교통기본법 제정 및 공공교통 안전강화 중심 : 변현석 |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 61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대책 마련 : 장동엽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 70

● 토론

더불어민주당 : 박두용 | 국민안심신안보위원회 위원장 | 74

국민의힘 | 88

정의당 : 김응호 | 정의당 부대표, 노동생명안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 90

국민의당 : 신나리 | 국민의당 부대변인 | 98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운 공동투쟁본부 : 장혜경 | 이백운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 | 100

진보당 : 송명숙 | 진보당 공동대표 | 110

“
차별과
불평등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로
”

● 참사 피해자의 목소리

가습기살균제 참사 | 116

조작되고 은폐된 경동건설 故정순규 사망사건 | 120

이게 말이 됩니까?-대구지하철참사의 본질과 풀어야 할 과제 | 124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 128

● 각 시민사회단체 제안

생명안전 의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 16일의약속국민연대 | 134

(사)김용균재단 20대 대선 요구 : (사)김용균재단 | 139

생명안전 시민넷의 20대 대선 의제 제안 : 생명안전 시민넷 | 146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의 20대 대선 의제 제안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 153

정의로운 전환, 안전한 세상, 탈핵을 앞당기자 : 2022탈핵대선연대 | 158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코로나19 방역체계 마련 :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 166

20대 대선, 시민사회 제안 생명안전 10대 과제

-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 -

10대 우선 과제	세 부 내 용
차별과 불평등 없는 생명과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 여성, 이주노동자, 현장실습생, 방문 및 이동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상병수당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별도 보상체계 개선 - 태아 산재보험 등 직업병 인정기준, 추정의 원칙 확대 및 승인 전 치료와 보상 등 심사승인 제도 개혁 - 산재 노동자 치료비 부담 제로화 및 재활 및 복귀를 위한 산재병원의 집중투자 및 공공성 강화 -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및 질병휴가제도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실질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및 개정 - 감독행정 전면 개혁 및 노동자 참여보장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 중대재해 사고조사 보고서 공개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위험의 외주화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작업, 2인1조,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 법제화 - 중소기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포함 안전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확대 - 유해위험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을 위한 기간제법 개정
과로사 예방 및 정신건강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로사 예방법 제정 및 실질 노동시간 단축 업종별 대책 추진 -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 예방체계 구축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작업중지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 - 노동자 참여권 전면 적용 및 활동시간과 권한 보장 - 노동부 전면 작업중지 명령 및 재발방지 대책 전 해제 금지 -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이행권고 강제 등 법제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피해자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피해자 인권보장과 지원체계 구축 - 소비자 집단 소송제, 징벌적 피해 보상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감염병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체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시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 - 공공의료 강화 위한 '공공의료관리청(가칭)' 설립 - 간병 국가 책임제 도입 - 영리적 치료행위, 의료가기·의약품 퇴출 - 의료인력 확충
교통안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기본법 제정 - 철도안전법 개정 - 화물운송 택배, 배달등 운송업 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적용 및 확대 - 온전한 택시 월급제 시행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제정 -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및 정부 부처 역할 강화 - 화학제품 안전법에 전 성분 공개 표시

생명·안전사회 기본 원칙

우리 사회는 위험사회이다.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가볍게 여기는 사회, 생명의 안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위험이 점증하는 지금,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다.

1. 생명 존중이 안전이다

정부는 안전을 '영토안보'와 '재산권보호'로 간주한다.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은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전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며, 사회의 제도와 정책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제로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 생명의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안전장치를 규제로 여기는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3. 위험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위험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집중된다.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이다. 생명 안전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는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하고, 제도적 자원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4. 안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 기업과 정부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이며, 안전에 노력을 다하지 않은 기업과 정부의 실질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5.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정부와 기업은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일상적으로 위험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을 때 생명구조를 일순위로 하며, 재난관리 체계를 갖추고 일상적 훈련을 해야 한다.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6. 재난과 참사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재난과 참사 피해자는 참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알아야 하고, 권력의 책임이 큰 경우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통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충분하게 배상을 받고 치유받을 권리가 있다.

7. 생명·안전을 지키려면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주체는 시민과 노동자이다. 노동자와 시민은 위험에 대해 알 권리, 위험작업이나 환경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기업과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권리, 안전을 위한 각 제도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8.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재난과 참사를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하여 재난과 참사에 대해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피해의 회복은 공감과 연대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국가와 기업이 생명안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여는 말씀

금년에도 죽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저는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김훈입니다. 오늘 여러 재난 피해자 단체와 생명안전 관련 시민단체들의 주최로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에는 생명안전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 정당의 정책 담당자도 참가하고 계셔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노동의 현장과 일상의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재난 참사는 이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풍토병으로 토착화되었습니다. '대기업이 모든 국민을 먹여 살린다'라는 이윤신앙이 불가침의 진리로 굳림하면서 날마다 거듭되는 죽음의 참상과 절망의 비명을 덮어버렸습니다. 일상 속에서 거듭되는 죽음의 세월이 쌓여서, 죽음은 또 다른 일상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죽음이 잇닿아 가면서 사회 전체는 이 죽음과 절망에 대한 감수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죽고 또 죽는 이 죽음의 허부구조 위에 이윤을 건설하는 관행을 '기업의 자유' 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유'를 제한해서 생명의 영역을 넓히려는 법제화에 대해 '규제철폐'라는 언설과 로비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저항력은 기존 법제의 허약한 구속력조차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구지하철 참사 19주기(2월 18일)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슴기 살균제 참사와 그밖에 수많은 재난피해자는 몇 년씩 지연되는 사실 규명과 산재관정을 기다리며 병상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은 어제오늘의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날마다의 문제들이 오랜 세월 동안 쌓여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악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가하는 여러 시민단체는 지난 수년 동안 생명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경험을 토대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사회 각계와 여러 정당에 제출했습니다. 이

「10대 과제」는 「차별과 불평등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지향하면서 당면한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상과 노동에서의 위험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고, 플랫폼 노동, 이동노동의 증가로 급변하는 노동행태에 대한 법제의 대응이 부실하며, 작업관리, 사고조사, 예방조치에서 노동자의 참여권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보건의료, 산재로 인한 상병치료에 있어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10대 과제」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사고사, 과로사, 자살, 상병은 광범위하게 조직된 불안정 노동의 틀 안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과 불안정 노동이 불평등의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전개되는 논의가 「반기업」의 언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업 재해의 문제는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의 문제라기보다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윤관리의 문제나 조직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 사회와 국가 전체의 문명도와 윤리의식 수준에 관한 문제이고,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동질성에 관한 문제이고, 미래 사회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경영자단체들은 스스로 앞장서서 문제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영자단체는 일부 법조문의 모호성을 부각시키면서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자세로 현실에 고착하는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이고도 인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줄 때, 기업은 국민적 신뢰의 토대 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전환과 신뢰로 가는 입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더 넓고 더 깊은 범위까지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가하신 여러 정당의 정책 담당자의 깊은 헤아림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2월 9일로 예정된 '대선후보, 생명안전 국민약속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월 9일 약속식에 여러 정당의 대선후보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참가하시어 희망의 정책과 경륜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5일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김훈

● 인사말씀

김미숙 | 용군이 엄마, (사)김용군재단 대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막고자 국민 72%가 찬성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안전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일터에서나 시민들의 희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노동은 필수이지만 안전이 방치되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매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 비참한 현실입니다. 시민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디 하나 안전이 보장된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위험은 일상이 된 듯하고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했던 안전은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한 기업의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생명안전 문제는 공동체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생명안전을 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과 더 큰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함에 여와 야가 따로 없고 이것 이상의 명분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누군가의 이윤을 위해 죽어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제안한 과제에 대한 깊은 검토와 그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하여 주십시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 인사말씀

김종기 |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단원고 2-1반 수진아빠

오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시민의 권리, 노동자와 피해자의 권리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서 국가는 무엇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토론하는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
전 대토론회'의 개최를 기꺼이 환영합니다.

생명은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사회를 구성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책임과 의무로 이러한 것들이 잘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게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 행복한 삶, 시민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피해자의 권리, 안전한 사회 등 국가는 국민
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불행하게도 국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국 이후 최악의 참사인 세월호참사도 국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은 국가 부재로 인해서 사고가
사건으로 결국에는 참사가 됐습니다.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국가가 할 일은
그 원인을 찾아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보완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탄핵 정권인 박근혜 정부
는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참사를 폄훼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피해자들
과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등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는 천칠백만 촛불 국민에 의해서 탄생한 촛불 정권의 문제인 대통령 역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의 검찰 특수단은 봐주기 식 영터리 수사로 당시 해경지휘부를 무혐의 처분하
였고 법원은 해경지휘부가 참사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보고는 받았지만 퇴선 명령을 판단하
기가 어려울 것이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해경지휘부 입장을 대변하는 궤변의 무죄 판결을 했습

니다.

또한, 7년 만에 한 세월호참사 첫 특검은 기존의 검찰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검찰의 명분 주기 용도로 전락한 특검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에 대한 어떠한 후속대책도 후속 조치도 없었습니다.

탄핵 정권인 박근혜 정부나 촛불 정권인 문재인 정부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죽음에 책임을 지는 진정한 사과도 없었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국가책임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유가족과 시민들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라도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약속을 실행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국정원, 군, 관련 부처의 자료제공과 대통령기록물 등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한 것들 또한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를 통해서 새로운 차기 정부를 구성할 대선 후보들께서도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월호참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이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이 한걸음 더 발전해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책무임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대전환기인 지금, 20대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오늘 대토론회가 제시하는 의제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고 실행하여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애써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인사말씀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차 별과 불평등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쟁취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산재·재난
참사 피해자 분들과 시민사회 활동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철저하게 배신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삶은 처참하게 파
괴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역대 최대 규모의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일자리, 주거·의료·돌봄·교육·교통
등 사회공공성 강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등등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
하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유력 대선 후보들은 누가 더 비호감인지, 부족한지 다투느라 여념이 없습
니다.

노동자 민중의 안전과 생명 문제는 어떠한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투쟁에 나섰고, 법 시행 직전이지만 어제도 오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노동자
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하는 소방관 노동
자의 죽음도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와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는 이윤 앞에 노동자의 시민과
생명을 등한시하는 범죄 집단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교훈과 반성 없이 또 다시 돈벌
이를 쫓다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노동시민사회가 토론을 통해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를 제출하
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차별과 불평등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각 정당은 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공약으로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돈과 이윤만 쫓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노동자 민중과 함께 반드시 이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차별과 불평등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발제

.....

.....

.....

.....

.....
안전한
.....

일터와 사회를 위한
.....

우선 10대 과제
.....

- 차별과 불평등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로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세월호참사와 매년 2,400명이 넘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노동자는 여전히 죽어나가고, 세월호, 가슴기살균제, 스텔라데이지 등 시민 참사는 그 어느 것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시민들이 법안을 만들고, 피해자 유족과 함께 투쟁하여 통과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19대 대선 당시 핵심 요구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있었지만 오히려 정부는 반대하고, 국회는 반쪽짜리로 만들었다. 노동자 시민의 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의 단초일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책무라고 주장하는 대선 후보들이 안전한 일터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통탄스러울 뿐이다.

경제, 방역, 문화, 군사 등 선진국 진입을 운운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2,400여 명의 산재 사망, 500여 명의 과로사망, 업무로 인한 자살 598명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차별과 불평등 및 양극화가 커지는 가운데, 특수고용, 플랫폼 고용의 증가로 생명안전의 사각지대는 확대되고, 코로

나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되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경제위기로 향후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은 더욱 위태롭고 생명안전의 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에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각 정당과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차별과 불평등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고, 영세기업 노동자, 건설, 여성, 이주, 현장 실습생, 이동 노동자 등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고용은 생명과 안전의 불평등과 차별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또한 안전의 차별뿐 아니라 보상의 차별로 이어져 생계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조건 차별, 생명안전 및 보상의 차별이 또 다른 차별을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굴레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확대되는 양극화를 막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 ‘차별과 불평등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과감한 혁신을 요구한다.

둘째,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과 확대

고용 없는 성장은 저성장 기조와 산업전환의 문제만이 아니다.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고용도 외면해 왔던 기업과 이를 방치해 왔던 정부에 있다. 2인 1조를 무시하고, 매년 520여 명의 노동자를 과로사로 몰고 가고, 안전작업을 위한 신호수, 안전전문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시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점검보수도 방치해 왔던 것이다. 공공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확충 요구가 무시되어 왔던 현실이 코로나19로 시민의 재난으로 이어졌다. 중소기업장의 1회성 예산지원 산재예방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장의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적정인력기준, 생명안전인력 확보 법제화, 공공안전을 위한 인력과 체계 등으로 생명안전이 법전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생명안전 분야 일자리 창출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권리 보장

생명과 안전은 정부와 기업의 시혜나 배려가 아니며 노동자 시민의 본연의 권리이다. 문재인 정

부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에서 가장 해결되지 못한 것이 노동자 시민의 권리이다. 위험에 대한 알 권리,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 예방 및 사고조사에 참여할 권리,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 어느 하나 진전된 것이 없다. 노동자 시민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생명안전 법 제도개선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없고, 일보의 진전도 수없이 많은 개악과 규제완화의 공세 속에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역진 없는 생명안전 개혁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생명·안전사회 기본 원칙 }

우리 사회는 위험사회이다.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가볍게 여기는 사회, 생명의 안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위험이 점증하는 지금,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다.

1. 생명 존중이 안전이다

정부는 안전을 '영토 안보'와 '재산권 보호'로 간주한다.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은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전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며, 사회의 제도와 정책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제로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 생명의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안전장치를 규제로 여기는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3. 위험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위험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집중된다.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이다. 생명 안전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는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하고, 제도적 자원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4. 안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 기업과 정부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이며, 안전에 노력을 다하지 않은 기업과 정부의 실질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5.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정부와 기업은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일상적으로 위험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을 때 생명구조를 일순위로 하며, 재난관리 체계를 갖추고 일상적 훈련을 해야 한다.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6. 재난과 참사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재난과 참사 피해자는 참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알아야 하고, 권력의 책임이 큰 경우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통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충분하게 배상을 받고 치유받을 권리가 있다.

7. 생명·안전을 지키려면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주체는 시민과 노동자이다. 노동자와 시민은 위험에 대해 알 권리, 위험작업이나 환경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기업과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권리, 안전을 위한 각 계도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8.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재난과 참사를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하여 재난과 참사에 대해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피해의 회복은 공감과 연대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국가와 기업이 생명 안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0대 대선, 시민사회 제안 생명안전 10대 과제

-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 -

10대 우선 과제	세 부 내 용
차별과 불평등 없는 생명과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 여성, 이주노동자, 현장실습생, 방문 및 이동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상병수당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별도 보상체계 개선 - 태아 산재보험 등 직업병 인정기준, 추정의 원칙 확대 및 승인 전 치료와 보상 등 심사승인 제도 개혁 - 산재 노동자 치료비 부담 제로화 및 재활 및 복귀를 위한 산재병원의 집중투자 및 공공성 강화 -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및 질병휴가제도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실질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및 개정 - 감독행정 전면 개혁 및 노동자 참여보장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 중대재해 사고조사 보고서 공개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위험의 외주화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작업, 2인1조,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 법제화 - 중소기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포함 안전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확대 - 유해위험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을 위한 기간제법 개정
과로사 예방 및 정신건강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로사 예방법 제정 및 실질 노동시간 단축 업종별 대책 추진 -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 예방체계 구축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작업중지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 - 노동자 참여권 전면 적용 및 활동시간과 권한 보장 - 노동부 전면 작업중지 명령 및 재발방지 대책 전 해제 금지 -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이행권고 강제 등 법제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피해자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피해자 인권보장과 지원체계 구축 - 소비자 집단 소송제, 징벌적 피해 보상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감염병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체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시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 - 공공의료 강화 위한 '공공의료관리청(가칭)' 설립 - 간병 국가 책임제 도입 - 영리적 치료행위, 의료가기-의약품 퇴출 - 의료인력 확충
교통안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기본법 제정 - 철도안전법 개정 - 화물운송 택배, 배달등 운송업 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적용 및 확대 - 온전한 택시 월급제 시행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제정 -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및 정부 부처 역할 강화 - 화학제품 안전법에 전 성분 공개 표시

1. 차별과 불평등 없는 생명과 안전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전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2조 별표에 의거하여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은 적용제외 사업장을 남발하고 있음. 이는 사고성 재해률에 기초한 분류로 감정노동, 근골격계 질환, 직무 스트레스 등 산업구조의 변화와 재해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규모별 적용제외나 차별이 남발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교육 등 기본 내용도 차별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한교현장에서 학교급식 조리사, 시설관리, 청소는 산안법이 전면 적용되고 그 외 직종은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현장의 호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공공행정의 경우도 동일하여 콜센터 상담원 노동자들이 하청업체로 있을 때는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있었으나,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니 공공행정으로 분류되어 산안법 적용제외가 되고 있음.

○ 업종별 적용제외와 더불어 고용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차별이 남발되고 있음. 1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이 적용되지 않음. 이와 같은 제도적 문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재해의 80% 발생으로 귀결되었으나,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감독 확대, 예산지원 대책만 반복하고 있음. 안전교육, 휴게시설 설치 등 고용규모에 따른 차별적 적용이 남발되고 있고, 이는 현행의 산업과 고용 실태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부 감독이나 행정편의에만 급급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특수고용 노동자가 250만 명에 달하고, 플랫폼 노동자는 약 160만 명에 달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고용구조의 변화로 증가하던 플랫폼 노동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증가로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안법은 2020년에서야 특수고용 노동자 산안법 적용이 도입. 현재는 전속성이 있는 특수고용 직종 14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교육이 실시되는 직종은 5개에 불과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조항만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위반 시 처벌도 과태료에 불과함. 이에 대리운전 기사 노동자는 산안법 적용을 받지만 감정노동 매뉴얼 제공 외에는 적용 조항이 없고, 전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산안법 적용 대상 노동자가 없음.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 화물운송의 경우에는 원청의 책임 조항도 적용되지 않

음. 건설기계 노동자는 폭염에 물, 그늘막 제공을 비롯하여 보건조치는 전혀 적용되지 않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에 대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직종이나 전속성과 무관하게 책임이 부여됨.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 이후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현행의 제한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및 안전보건조치와 충돌하게 됨.

○ 여성, 이주노동자, 방문 및 이동 노동자는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가 없음. 사업장의 각종 보호구는 남성 중심으로 제작, 지급되고 있음. 여성 노동자의 취업이 절반을 넘고 있으나, 안전보건 전체에 남성, 여성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는 전혀 없음. 이주 노동자 산재사망이 매년 100명을 상회하고 있음. 노동환경이 열악하여 구인이 어려운 사업장에 이주 노동자가 주로 일하게 되면서 위험이 2배, 3배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도 전담기구도 없음. 가전 설치 수리, 건물 외벽 도색, 가스 및 수도 검침, 방문 판매, 재가 영양 보호 등 고정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고객의 사업장이나 주택에 방문하여 일을 하는 이동노동이 급격히 확대되었음. 에어컨 설치 수리 노동자의 추락사망, 건물 외벽 도색이나 유리창 청소 노동자의 경우 추락사망이 연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산안법의 안전보건조치는 고정 사업장을 전제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부여하고 있음. 집매, 검침 등 이동하는 노동자의 폭염 대책은 전무하고, 고객의 집을 방문하는 노동자의 고객에 의한 폭력, 폭행 등에 대한 대책도 전무함. 고정 사업장을 전제로 한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적용할 조항이 없고, 수년 동안 이러한 문제가 방치되어 있음.

○ 사고사망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은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산업임. 그러나,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시공의 원하청에 대해서만 작동하고, 건설업 발주처의 책임은 2020년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이 없음.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붕괴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는 건설업 9위의 현대산업개발에서 발생함. 수년 동안 산재사망이 다발했던 기업에게 광주 학동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시민재해라는 이유로 산업안전공단의 안전인증기업도 유지되었음. 레미콘 타설과 양생, 감리, 설계 구조 등 복합적 원인이 드러나고 있으나, 건설 안전 특별법은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이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처벌은 하청에만 집중되고, 원청은 말단관리자 과태료 처분에 불과함.

2) 요구

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2조 개정 및 별표 삭제로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을 폐지하고 전면 적용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종사자 혹은 노무 제공자로 개정하여 전면 적용. 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 책임,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장의 본점의 원청으로서의 책임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개별 조항의 사업주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유해위험 요인 점검, 위험성 평가, 종사자 의견 수렴 등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전 예방조치인 산업안전보건법도 그에 맞게 개정되고, 다수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보건 정보제공, 특수건강검진 실시 등 보건조치 등의 적용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② 현장 실습생, 여성, 이주노동자, 방문 및 이동 노동자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 대책

- 방문 및 이동 노동자 특성에 따른 작업별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및 이행 담보를 위한 지자체 협업 대책 수립
-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장은 현장 실습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 실습이 진행되는 경우 별도의 안전대책과 조치
- 이주 노동자 산재사망 대책 수립 관계 부처 공동 논의 및 이행. 이주 노동자 공동체등 접근성 있는 대책 이행
- 여성 노동자에 맞는 보호구 개발 지급, 여성 노동자의 안전보건 및 건강조치 전면 검토 및 개정

③ 발주, 설계 시공 각 주체의 안전책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
- 불법 재하도급의 원청 책임자 처벌 강화: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
-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산안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2.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노동자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산재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해외파견 노동자, 농업 선원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되지 않고 있음. 특수고용노동자는 전속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리운전 기사 노동자는 법 적용 4년 동안 2명만 적용되었음.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병 노동자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특수고용, 플랫폼 산재보험 적용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휴업급여 최저보상 기준 별도 적용 등 차등 적용방안이 제출되고 있고, 적용직종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있음.

○ 학교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폐암으로 인한 산재승인이 붓물처럼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조리 흡은 작업환경 측정이나 특수검진대상도 아니며, 산재보상의 직업병인정기준도 없음. 조리 노동자 폐암은 학교 급식만의 문제가 아니며, 단체 급식이나 중화요리 식당, 치킨 등 튀김요리 등 조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심각한 직업성 암의 문제임. 그러나, 직업병 인정기준에는 명확한 명시가 없어 조직되지 않은 절대다수의 조리 노동자는 산재보상에 대한 접근성조차 확보되지 않는 것임.

○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질병도 지난 기간 동안 수백 명의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감염병 질환이 병원과 기숙사 등 집단시설에만 기준이 되어 있음. 인정기준에 명시되지도 않았고, 이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해조사, 질판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음. 또한, 사업장에서 감염성 질환에 감염되어 가족에게까지 전파된 경우, 가족에게는 감염병 법에 의한 낮은 수준의 보상만 적용됨. 콜센터 등과 같이 밀집된 사업장에서 사업주 조치 미비로 가족까지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되지 않는 것임.

○ 건설, 조선, 폐기물 처리 등 종사 노동자의 석면 폐암이 심각한 상황이나 직업력 증명이 어려워 업무상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석면피해구제법의 일시 보상만 되고 있음. 타이어 등 고무제조업의 직업성 암, 학교급식 조리사 노동자의 폐암 등이 직업병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아 산재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고, 산재신청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으로 보상되는 산업재해는 직업병 인정기준이 협소하게

나, 심사승인과정에서 당사자 참여 보장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음. 선원 노동자의 경우는 사업주 단체가 심사승인을 하고 있어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음.

○ 산재신청과 승인에 평균 170일이 소요되고, 직업성 암의 경우는 2-3년이 소요되는 현행의 산재 심사 승인 제도는 노동자의 조기 치료는 불가능하고, 노동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 현재 산재 신청 이후 심사 승인까지 과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전 국민 상병수당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시범 사업 실시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요양비(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차별이 크지 않고, 상병수당 도입으로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와 같이 생계보전 방안이 마련된다면, 현재와 같이 산재심사승인을 위한 과도한 행정절차는 불필요한 행정낭비이며, 산재 노동자의 신속한 치료와 재활 복귀를 가로막는 요소로만 전락하게 됨.

○ 산재 노동자의 치료비 부담이 전혀 없는 독일,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화상사고, 직업성 암 등 산재로 승인받은 노동자의 치료비 개인 부담 비율이 높고, 산재로 승인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등 산재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조기에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통한 직업복귀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위한 산재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집중 지원도 수십 년 답보상태임.

○ 국제노동기구 가입 국가의 3분의 2에 도입되어 있는 질병 휴가제도도 도입되지 않고, 선진외국에 이미 정착되어 있는 상병수당도 없음.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시기에 감염확산을 위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불평등 차별이 극명하게 드러났음.

2) 요구

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차등 없이 전면 적용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차등 없이 전면 적용하는 산재보험 법 개정
- 간병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 특고, 플랫폼 직종 차별 없이 전면 적용
-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분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특수고용, 플랫폼 고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엄정 심의. 심의기구 노동자 참여

② 농업, 어업 노동자 및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산재보상 기준과 절차 개선

- 산재보험의 직업병 인정기준, 추정의 원칙 적용 등을 특수목적 연금 등 동일 적용

- 산재심사 승인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노동자 참여 등 제도개선

③ 직업병 인정기준, 추정의 원칙 확대 및 승인 전 치료와 보상 등 심사승인 제도 개혁

- 현행 뇌심질환 인정기준은 주당 60시간 노동으로 근로기준법의 법정 노동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조리 노동자의 폐암, 타이어 제조업의 직업성 암 등 직업병 인정기준의 정기적인 개정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상설기구화>가 필요함.

- 지난 3년간 직업병 산재신청은 30%가 증가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상담 인력은 5명만 증원함. 산재신청 이후 7일 이내에 산재승인이 결정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직업병의 경우에는 신청 후 승인까지 120일이 넘게 소요되고 있고, 직업성 암의 경우에는 3-4년이 걸려, 산재신청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에 승인 결과가 통보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임. 현재 일부 직종에서 현장 재해조사를 생략하고 기간 단축을 하고 있는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질병판정위 심의 제외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

-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우선 치료와 보상을 진행하고, 이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처리 여부는 정부 행정기관 사이에 정산하도록 하는 <선보장 후평가> 제도 도입

- 산재신청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주의 정보 제공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하고, 산재보험법상의 사업주의 조력의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과 정부 감독을 실시해야 함.

④ 산재 노동자 치료비 부담 제로화 및 재활 및 복귀를 위한 산재병원의 집중투자 및 공공성 강화

- 산재 노동자의 요양 및 재활을 위한 비용은 전액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제도로 지급되도록 법제화

- 산재 노동자의 재활 및 복귀 활성화를 위해 거점기관으로 산재병원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고, 산재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병원의 운영방식 전면 개편

-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와 재활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확대가 필요함. 아울러 영리를 위해 과잉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강제되고, 과잉진료로 인한 산재 노동자의 비용과 고통은 의료기관의 보상이 실질 이행되도록 정부 감독 및 처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⑤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및 질병 휴가제도 도입

- 아프면 치료받고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질병휴가 제도 도입과 전 국민 상병수당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하고 시급히 도입되어야 함.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실질 적용

1) 현황 및 문제점

○ 안전한 일터와 사회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5인 미만 적용제외 및 50인 미만 적용유예로 중대산업재해의 80%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기업은 5인 미만 고용에 특수고용 플랫폼으로 고용하는 쪼개기 계약, 변칙 계약이 확대되고 있음.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로 실질 처벌이 어렵고,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로 시민재해 근절도 유명무실의 위기에 놓여 있음.

○ 실질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감독행정 개혁은 진행되지 않고, 감독인력 증원만 일부 진행되었음. 감독행정의 내용적 변화 없이, 노동부 내부의 양적 확대 일부만 진행된 산업안전보건본부 발족으로는 재해예방과 감소를 추진 할 수 없음. 현행의 개편은 중대재해 감독과 수사 진행으로 한정적 역할만 수행하게 될 것임. 노동자의 참여가 현장부터 감독방향과 집행까지 보장되는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으로 감독행정의 전면 개혁이 필요함.

○ 1년에 추락사망이 320여 명인데 비하여, 산재로 인정되는 과로사망은 500여 명에 달하고 있음. 과로사망의 핵심원인인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은 실질적으로 사업주 처벌이 아니라, 초과근로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으로만 끝나고 있음. 근로기준법에 일터 괴롭힘 방지의무가 도입되었으나, 실제 감독과 처벌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2019년 업무로 인한 자살은 590여 명에 달하고 있음.

○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청년 노동자 7명 실명은 불법파견과 연동되어 있음. 하청 고용, 파견 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 노동자에게 산업재해가 집중되고 있으나, 현행은 산업안전감독과 근로감독이 각각 분리되어 있음. 고용구조의 파편화가 산업재해의 증가, 취약한 사각지대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산업안전감독과 근로감독의 융합적 적용이 필요함.

○ 중대재해에 대한 사고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책 수립에 대한 노동자 시민 참여도 배제되고 있음.

2) 요구

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도입 등 개정

- 5인 미만 적용제외, 50인 미만 적용유예 등 삭제 전면 적용
-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조항, 양형절차 특례 도입
- 건설, 조선업 등의 발주처 공기단축 처벌, 건설현장 인접 장소 사고등 적용 대상 확대

② 감독행정 전면 개혁 및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 산업재해 실질 감소를 위한 노동부 감독행정의 전면적인 개혁
 - 과로사 및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및 사업주 처벌강화
 - 산업안전감독과 근로감독의 융합적 운영
 - 재해예방 감독, 기획감독, 직업성 질병 감소를 위한 보건감독의 질을 제고
 - 감독행정 개혁의 핵심인 노동자 참여와 감독 이후 사업장 개선대책 이행 강화
 - 감독행정 개혁의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감독의 질 제고임. 감독 물량 증가에만 착목하고 있는 현행 감독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

○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및 현장부터 이사회까지 노동자 참여 보장

- 감독행정의 내용적 변화 없이, 노동부 내부의 양적 확대 일부만 진행된 산업안전보건본부 발족으로는 재해예방과 감소를 추진 할 수 없음. 현행의 개편은 중대재해 감독과 수사 진행으로 한정적 역할만 수행하게 될 것임.
-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 실물과 사업장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전략적 사회적 논의와 결정을 통한 안전보건 감독이 진행되어야 함. 이를 전담할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고, 노사동수의 이사회 운영 및 산업안전보건청 사업 전반에 대한 노동자 참여 전면적 확대를 현장에 기초한 감독행정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야 함.

③ 중대재해 사고조사 보고서 공개

- 산업안전공단의 모든 사업장의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 중대재해 발생 시 정부, 지자체의 합동 사고조사 보고서 공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조사 보고서 공개

4.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및 위험의 외주화 금지

1)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사고사망 733명 중 혼자 작업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353명으로 48.16%에 달함. 이중 제조업이 114명이고, 건설업은 92명임.

[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 동시 작업인원]

구분	총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운수창고	기타
총계	733	1	190	308	1	37	191
혼자	353	4	114	92	1	26	116

○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와 같이 재해다발의 원인은 위험업무의 2인1조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매년 520명의 과로사망,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의 주요한 원인은 현장의 적정인력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강제가 없음. 재해 및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의 법제화는 산재감소뿐 아니라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임.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보가 중요하나, 현행의 안전보건 전문인력 기준은 아예 선임적용제외가 많고, 수천 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2명 이내만 선임기준임. 동일 사업장의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산정기준도 없음. 2,000여 개의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청에 2명의 안전관리자, 2명의 보건관리자만 선임하고, 안전보건관련 업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으로 안전관련 조직기구표만 있고, 전문인력이나 적정인력은 확보하지 않고 있음.

○ 산업재해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수십 년간의 정부의 1회성 감독강화와 예산지원 대책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확인되고 있음.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적용 제외되어 있음. 중소기업의 공동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공공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일회성 지원대책이 아닌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과 공공성이 있는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며, 중소기업에 안전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도급금지가 도입되었으나, 화학물질 중심으로 도입되어 구의역 김군, 태안 화력 김용균을 비롯해 반복적 사망이 지속되는 조선업도 도급, 재하도급이 다발하고 있음. 국가 인권위에서 도급금지 대상 범위 확대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도급 금지 대상 업종인 경우에도 직접 고용 전환하면서 기간제, 단기 고용, 촉탁직 고용 등 편법을 자행하고 있음. 당진 현대제철소 도급 처리작업도 기간제 고용으로 전환하고, 조선업 등에서도 물량팀은 유지하면서 오히려 단기계약 등 쪼개기 계약으로 1차 하청이라는 형식적 요건만 전환시키고 있음.

2) 요구

① 위험작업, 2인1조,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 법제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 처리작업의 3인 1조, 코샤 가이드, 장비 매뉴얼, 한국전력공사의 활선 작업 매뉴얼 등 각종 하위 규정에 있는 위험 작업의 신호수 감시자 고용,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등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작동, 운전 등 위험작업의 2인1조 작업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제화

- 유해위험 기계 기구의 심야 단독 작업 금지, 검침 등 고객 방문 작업의 2인 1조 작업 법제화

- 지붕 작업, 건물 외벽 도색 및 청소 등 위험작업의 2인1조 작업 법제화

-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 다발의 위험이 있는 중량물 운반, 일정 기준 이상의 가전제품 운반 및 설치, 단체 급식 조리 업무 등의 적정인력 기준 제시 및 법제화

-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인력 기준 법제화

② 중소기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공공성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업종, 규모 무관하게 전면 적용

- 30인 혹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허용

- 1명의 안전 관리자가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복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활동을 하도록 함. 동일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 공단이 공동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채용하고, 공단에 입주해 있는 일정 숫자의 기업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며, 정부가 예방기금으로 공동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 제조업은 산업단지 공단. 아파트형 공장, 도심형 제조업, 00시장 등 도소매업, 00 거리 등 음식점 등으로 업종의 특성에 따라 체계 구성. 지

역 노동청, 지자체의 일정한 협의구조로 운영 및 관리 진행.

-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립으로 재해예방 및 감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며,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짐.

③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확대

- 현행은 고용계약별,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규모별 선임기준이 높음. 이에 100인 미만 하청 기업이 수백 개 있는 현장도 원청의 고용인원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만 하면 됨.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선임의무도 없음.

-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사고성 재해나 화학물질, 감염병 등 각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발생하고, 전체 사업장의 종사자 모두에게 발생함.

- 이에 파견,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장 종사자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고용하도록 함.

- 사업장의 전체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력 기준을 수립하고,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기준으로 대폭 확대함(현행은 수천 명 사업장도, 수만 명 사업장도 2명 이상이면 충족하도록 되어 있음).

-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정규직 직접 고용을 법제화: 겸직 금지 법제화

사업장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선임 의무만 부여하고,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1개월에 1회 형식 점검을 받거나, 겸직 허용으로 예방업무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업무 경합도 쌓이지 않고 있음.

- 기업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의 각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겸직 허용 등 규제완화 폐지 및 원상 회복

④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확대

- 철도 지하철 등 궤도의 선로보수 등 위험작업 도급금지

- 조선업 도급승인 대상 확대로 재 하도급 금지

- 발전소, 방사선 취급 업무 등 위험작업 도급금지

- 도급금지 대상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확대 심의 상설기구 설치

⑤ 유해위험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을 위한 기간제법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으로 기간제법 개정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정규직 직접 고용으로 기간제법 개정

5. 과로사 예방 및 정신건강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산재보상으로만 520명의 과로사 발생. 외국 사례에서는 공무원, 교사 등의 과로사 발생 비율이 높으나 합산 통계가 없음. 1일 16시간, 17시간 장시간 운전을 하는 버스, 화물운송 노동자나 과로사가 연속 발생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970만 명,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노동시간 특례업종 노동자 112만 명, 재량노동자 200만 명, 감시단속 노동자 100만 명 등 노동시간 관련 규제의 적용제외 대상이 너무 많음.

○ 과로사 예방은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장 중요한 방안임. 그러나, 법정 노동시간은 실질 이행되거나 위반 시 처벌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공무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게임산업의 크런치 노동은 IT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연동되어 있고, 방송, 영화부문의 과로사, 과로자살의 다발도 산업적 특성과 고용 및 계약의 구조와 관행이 주요 원인임. 이에 과로사 실태에 입각한 과로사 예방법 제정으로 실질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본에서 제정된 과로사 예방법을 한국의 고용구조 특성에 맞게 보완하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각종 법 제도개선과 조치에 대한 강력한 강제성을 보완한 법 개정이 필요함.

○ 화물운송, 택배 및 배달 및 운수업 종사 노동자의 과로는 적정운임 보장이 근본원인이며 이는 노동자의 과로사망과 죽음운전으로 인한 시민재해로 이어지고 있음. 영화 방송등 문화예술업계, 게임산업 노동자들의 1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은 산업전반의 계약구조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실질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노동자의 정신건강 위협이 치명적 위협으로 되고 있어 정부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업무로 인한 노동자의 자살이 연간 600명에 달하고 있음.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으로 노동자 시민의 우울증 증가가 계속되고 있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정신

건강을 위한 예방대책과 법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함.

○ 매년 520명에 달하는 과로사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제도개선과 더불어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과로사 예방법 제정이 필요함. 과로사 예방법 제정은 고용구조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실질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일자리 창출과 확대로 이어질 것임.

2) 요구

① 과로사 예방법 제정 및 실질 노동시간 단축 업종별 대책 추진

- 과로사 예방을 위한 노동자, 피해자 유족이 참여하는 기구 구성
-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근거법 개정 뿐 아니라 산업구조 및 고용과 계약문제를 포괄하는 업종별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 이행하도록 강제
- 공무원, 병원, 영화 방송, 화물, 택시, 택배 등 과로사가 집중되는 업종의 산업구조 문제와 연동된 실질 노동시간 단축 업종별 대책 마련 및 추진
- 업종별 대책 권고에 대한 범 정부의 이행 강제

②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사업장 예방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확대

-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전 업종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예방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일터괴롭힘 사업주 예방의무 법제화
- 사업장별로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사업장 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부여, 사업장 보건관리자 자격, 관련 교육 실시 의무 명확화 등 법제화 및 정책 수립

6.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 참여권, 작업중지권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을 위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요구는 삼성과 산업

자원부의 전면적 공세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묵살되고 개악되었음. 2019년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예외 없이 비공개와 목적 외 사용 공개를 금지함.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알 권리도 박탈당한 것임.

○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사업주의 처벌조항이 없고, 개별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작업거부권이 없음. 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위험작업 지시에 대한 거부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음. 폭염과 한랭 한파 및 미세먼지로 인한 노동자 피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작업중지권 권고로만 되고 있어 무력화 되고 있음. 기후위기의 가속화에 따르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작업중지에 따르는 임금보전 및 원하청 계약의 손실 보장에 대한 법제화로 작업중지권의 현실적 보장이 되어야 함.

○ 노동자의 사업장 산재예방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로 규모별로 적용제외가 남발되고 있음.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활동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사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 출입권도 제한되는 등 권한도 보장되지 않음. 산보위,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서 노사가 참여한 개선안은 실질 이행도 강제되지 않고 있음. 30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현장의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현실화 될 수 있으나 노동자 참여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30년 이상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가 제한적이고, 작업중지 해제 시에 노동조합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지 해제가 남발되고 있음.

○ 구의역 김군, 세월호참사 이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 제도화>를 발표했고, 노동부의 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사고조사의 노동자 참여를 권고했음. 그러나, 이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김용균 특조위 등 개별 중대재해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의 이행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있음.

2) 요구

①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으로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 보장

-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정보의 예외 없는 비공개 명시 조항 삭제
- 산업기술 포함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 공개 금지 조항 삭제

- 비밀 유지의무 대상자 확대 조항 삭제
-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별법의 알 권리 관련 개악 조항 삭제

② 노동자,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작업 중지권 보장

-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조합(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권 보장 및 사업주 불이익 처우 형사처벌 법제화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거부권 보장 및 사업주 불이익 처우 형사처벌 법제화
-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손실 및 원하청 계약 손실보장 법제화로 실질적 작업중지권 보장
- 폭염, 한냉, 한파, 미세먼지 등에 따른 작업중지 법제화

③ 노동자 참여 보장

- 노동자 안전보건 활동시간 보장. 근로시간 면제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명시적인 활동시간 노사합의로 보장.
- 산업안전보위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확대 및 작업중지권, 현장 출입권 보장
- 산보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자 대표의 현장점검 등 활동시간 보장 법제화
- 하청 노동자, 소수 노조의 노동부 사고조사, 특별근로감독 참여 보장. 원하청 산보위 법제화

④ 노동부 작업중지명령 개정

- 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규정 개정 (화상사고, 고열작업등 사망에 대한 기준 정비)
- 사망사고 발생 시 전면 작업중지 법제화
-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전 심의 의결 명시
-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이행 확인 후 작업중지 해제로 명시

⑤ 국민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이행 권고 강제 등 법제화

- 노동자, 시민, 피해자가 참여하거나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법제화
- 사고조사위원회의의 이행 권고에 대한 부처 및 관련 기관의 이행 의무 법제화

7.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피해자 권리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 재난 참사와 산업재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고 사회구조의 문제이며 공동체의 과제임. 그러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문화와 인식, 관례와 법제도가 여전함.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자 인권보장과 지원체계,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영향평가제도와 독립적 조사기구설치 등 제도 구축을 위한 생명안전의 기본법 제정 필요. 생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인한 피해자들은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제공도 받지 못하고, 구조 및 수습과정에서 지원체계도 없이 비인도적인 상황에 방치되고 있음. 피해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법 제정 필요.

○ 후진적 참사의 지속적 재발은 지난 참사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는 현실 반증이며, 유사 참사 반복의 근본적 원인 개선에 초점 두어야 함. 그러나, 생명안전은 지속적으로 <규제>로 보고 규제 완화, 규제개혁위원회 대상으로 보고 기업의 입장만 반영되고 있음. 중대사고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재발방지책이 정책과 현장에 환류되어 참사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함, 이를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운영과 안전영향평가제도 등 장치 도입(안전정책의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대로 된 피해조사와 보상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하고, 집단소송도 증권분야로만 한정되어 있음.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업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윤을 우선시 하는 기업에 의한 시민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음.

2) 요구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피해자 인권보장과 지원체계 구축
- 안전을 규제완화 및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책이나 주요 사업에 안전과 생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안전영향 평가제도 도입 및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 소비자 집단 소송제, 징벌적 피해 보상

8.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감염병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 감염에 더욱 취약했던 시설의 장애인, 요양보호시설의 노인과 약자, 돌봄 종사자,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집단거주 형태의 기숙사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이주노동자, 수용자, 빈곤 계층 등 일상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있던 이들은 감염병에 더욱 취약했고, 그 피해 역시도 컸음.

○ 감염병의 공포와 위기는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인권을 유예하거나 후퇴시키는 근거가 되었음.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방역정책으로 인해 코로나19 초기 감염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낙인이 되거나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었음. 방역수칙 위반자를 신고하여 포상하는 제도, 구상권 청구와 고발 조치, 처벌 중심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엄벌주의는 두려움과 차별을 확산하는데 일조하였음.

○ 공공병상의 OECD 평균은 약 75%이지만, 한국은 10%에 불과함. 나머지 90%의 민간병상은 지난 2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거의 나서지 않았고, 10%의 공공병상이 70-80% 코로나19 환자를 떠맡았음. 공공병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공공병상을 확보하는 방식이 기존 공공병원을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면서 이들이 다른 질환에 걸려도 치료받을 수 있는 없어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의료공백이 발생함. 위급한 상황이지만 민간대형병원 병상 동원 명령 병상은 3%에 그침.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병원 확보에 나섰다고 하지만 획기적인 변화는 아님.

○ 한국의 인구 당 활동간호사는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고, 병상 당 활동간호사 수는 5분의 1 수준임. 적은 인력으로 인한 살인적 노동강도 때문에 간호사들이 건강을 잃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적지 않았음. 그래서 한국은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50%에 육박하고 숙련 간호사가 특히 부족함. 이런 와중에 팬데믹이 발생하자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간호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음.

2) 요구

- 재난 시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 구축
-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
- 공공의료확충, 관리일원화 등 공공의료 전달체계 통합 강화 위한 '공공의료관리청(가칭)' 설립
- 필수의료 병상 간병 전면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병국가책임제 도입
- 온실가스 감축, 과도한 의료비 축소 위해 치료효과 없고 비싼 영리적 치료행위, 의료기기·의약품 퇴출
- 의료인력확충 :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 수 최저기준 제도화, 공공의과대학 신설 및 국립의대 정원 확대하여 의사 인력 확충, 지역공공의료기관 의사의무복무제, 인력기준 미달 병상 퇴출

9. 교통안전강화

1) 현황 및 문제

- 경제위기와 코로나 사태로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 증대함. 교통사고로 후천적 장애인 증대와 보행자 및 고령자 사고율 최대임. 국가 온실가스 비중에서 교통수송부문의 도로 배출원이 14%를 차지하고 있음.
- 통합적인 교통 기구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의 기계적 분할로 인해 교통 정책의 한계가 발생함.
- 운수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안전문제 등 내용도 부실함. 화물운송차량의 사고로 매년 1천 4백여 명의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화물운송의 안전운임제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몰제 적용으로 3년만 시행되고, 사업주 단체의 거센 저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코로나로 인한 배달 노동의 증가와 과로사 및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택배나 배달 등의 분야에서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지 않고 있음. 지하철의 사고예방을 위한 2인 승무제, 무인역사 철폐 등은 시행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의 교통관련 법제는 개별법 중심의 체계로 교통정책의 기본원칙과 더불어 이동약자들의 교통권 보장과 교통정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규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노동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없음.

○ 교통의 운송수단 간의 위상체계와 인프라 정책, 그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전환의 방향과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 등과 같은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버스, 지하철을 넘어서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공성 확보와 통합적인 관계에 대한 관점이 없음.

2) 요구

- 교통이동권, 공공교통, 교통격차, 교통전환을 위한 국민의 권리 명시 교통 기본법 제정
- 철도 종사자 대표가 참가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철도안전법 개정
- 화물운송 택배, 배달등 운송업 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적용 및 확대
- 온전한 택시 월급제 시행
- 공공교통 이용하는 이용자 시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정책참여 보장

10.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대책

1) 현황 및 문제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최근 6년간(2014년~2019년) 통계로 살펴보면 화학사고의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41%로 가장 높고 작업자 부주의 36%, 운송차량사고 20%, 기타 3%임.

○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요원인 임. 또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계획예방정비에 소요되는 수선비가 제조원가에서 계속 감소함. 노후설비에 대한 예방정비가 제대로 안 되면서 사고는 계속되고 있음.

○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공공일반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으나 정작 더 위험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법 제도는 기업에게만 책임을 주고 있음. 화학사고는 공장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의 감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 시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 사상 최악의 생활화학제품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뒤, 2019년 「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됨.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업체가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용도’를 환경부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생활화학제품 위해 정보 등 제품 정보 제공은 일부에 그치고 있어 문제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해물질 정보 알 권리 강화(57-2)’는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고 평가함. 물론 환경부-시민사회-기업 간 협업으로 세탁제·방향제 등 22개 기업의 1,500여 개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 정보를 ‘초록누리’에 공개할 예정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기업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 성분 공개 확대와 제품 각 성분에 대한 유해성 공개도 추진하고 있기는 함. 그러나 여전히 협약을 통한 자발적 공개에 그쳐 강제성이 있을지 의문임.

○ EU REACH(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제도)의 경우 엄격한 화학물질 평가 과정을 통해 등록을 마친 화학 물질만이 제품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개별법(예. 화장품법, 살생물제법, 식품접촉물질법 등)으로 전달되고, 품목별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함.

○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은 생활화학제품 35개 품목과 살생물 제품뿐인 게 문제임. 시중에 유통 중인 수많은 화학물질과 제품 관리체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과 위생용품법,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특별법 등 개별 정부 부처로 나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중복 규제나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화학물질등록 평가법」을 중심으로 관리를 일원화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는 체계의 변화가 필요함.

○ 국내 법제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의 위상을 화학물질관리 기본법으로 상향시켜야 하며, 화학물질과 제품의 일원화된 통합 관리를 위해 정부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우선 어린이 제품의 안전관리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토록 해야 함.

○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국민들의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와 같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등에

‘전 성분 공개·표시’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률에 시행 근거를 명시하고 운영토록 해야 함.

2) 요구

- 노후화학설비 정기 실태조사
-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제정
-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및 정부 부처 역할 강화
- 화학제품 안전법에 전 성분 공개 표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피해자 권리 강화를 통해 안전사회로!

오지원

생명안전 시민넷 법률위원장 /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대표변호사

1. 20대 대선, 안전공약은 실종되었고 안전사고는 계속된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당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안전문제에 관해 제대로 된 공약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2022. 1. 16. 기준 나무위키 등 인터넷 검색결과).

이러한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죽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건물이 붕괴되어 실종자들을 수색 중이고 평택에서는 화재진압을 하던 소방관들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나마 이런 사건들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지만 언론에 나오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죽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 죽고, 마트에서 안전하다고 판매하는 기습기살균제를 쓰다 죽고, 불이 났는데 대피로가 없어 죽고..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도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안전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20대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부재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평택 냉동창고 화재와 광주 신축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지휘부를 소집해 화상 회의를 열고 27일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사고 수사 역량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 청장은 “항상 문제의식을 느끼고 생활 주변 사고요인을 발굴·제거하는 활동을 일상 화하고, 대형사고 발생 시 교통통제·주민대피 등 매뉴얼에 따른 현장 조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¹⁾

경찰청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원칙적이고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과거 수많은 안전 사고와 참사 때도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범죄혐의를 중심으로 한 수사만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규명 및 예방책 마련에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이 그 매뉴얼인 ‘경찰재난 관리규칙’대로 대응하는 것은 다른 부처의 매뉴얼들과 마찬가지로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여러 참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해자 관점이 없는’ 변화된 국민들의 권리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응방식 일 뿐입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진짜 변화’입니다. ‘누가 진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하는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데 안전문제에 대해 내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는 후보 자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양당 후보들은 안전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공약을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 중요한 공약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 피해자들의 권리 강화”를 통한 안전사회로의 진입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 앞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참사 이후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출범했지만 많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안전문제가 모든 문제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자각이 부족했던 점이 그 한계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헌법상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기본적 인권의 전제입니다. 이러한 인식 없이

1)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1/14/MF7MWNTIKNDXFK5B3SYKDG5QE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안전은 언제나 경제문제보다 부차적으로 취급되어 왔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경제도 이윤도 없습니다. 안전은 최우선의, 가장 중요한 공적 투자입니다. 안전문제는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용 문제도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일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작업장과 사람들이, 제품이, 서비스가 안전하다는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하다는 신뢰”와 “실질적인 변화”는 국민의 안전을 권리로서 명확히 하고 공급자 중심의 대응에서 수요자 중심의 인권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국가의 역할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기에 공무원들이 변화해야 합니다. 공무원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1차적으로 “법률”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새로운 정권이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내용입니다.

2.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법안 제정이유에서 인용)

-대한민국은 참사가 끊이지 않는 나라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는 (1) 안전문제를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삼을 뿐 국민과 피해자의 안전권과 인권문제로 바라보지 못했던 점, (2) 피해자나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가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갖춰져 있지 않은 점, (3)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역시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던 점, 그것이 수립된다 해도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없었던 점 등에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참사와 가슴기살균제참사 등 연이어 발생한 여러 사고들 이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교훈을 집적하고 그 교훈을 제도 전반에 반영하여 안전사회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강해졌는데 현행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들만으로는 그러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울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사고를 제대로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만으로는 안 되고 수요자이면서 대상자인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권리로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재난안전관리라는 행정작용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로써 교훈을 축적하고 그 교훈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이에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업 및 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보장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등 안전 관련 제도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질적,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3. 생명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정부안전 안전기본법 역시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나, 안전기본법은 재난과 안전을 분리하여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별도로 둔다는 것이어서 현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의 관계 설정 문제, 안전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문제, 피해자와 안전약자 등의 개념을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현실에 변화를 가져오기 힘든 한계, 독립조사기구를 인정하지 않고 안전영향평가도 기존에 행해오던 방식과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점 등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및 국가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난·재해 또는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를 “안전”으로, 재난과 재해를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하는 사건을 “안전사고”로 규정하고, 안전사고의 직·간접적 피해자 등을 “피해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중중 및 차별 없는 기본적 권리의 보장,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 접근 보장, 구제를 받을 권리 보장 등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라. 모든 사람에게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됨을 “안전권”으로 규정함(안 제5조).

제5조(안전권)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이하 ‘안전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마. 안전약자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 의무 및 피해자의 구조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 안전약자와 피해자가 보장받는 권리와 국가 등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제7조(피해자의 권리) ① 피해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안전사고의 발생 경위·구조 및 수습 과정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피해자는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각호를 포함하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8.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수습을 요구할 권리

9. 사고원인과 국가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

10. 배·보상을 받을 권리

11.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후속 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12.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13. 기타 이 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바. 모든 사람에게 국가 등 또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 등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함(안 제8조).

제8조(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공개) ① 누구든지 국가 등 또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등 또는 기업 및 단체 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와 관련된 감사원·조사기구 등의 조사결과와 법원의 판결서
2. 안전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국가 등 또는 기업 및 단체 등의 명칭·사업장·사고원인·재발방지와 피해회복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내 유해위험 물질 취급 및 노출에 관한 정보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
4.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

사.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피해자 지원의 원칙, 국가 등의 안전 재정 및 인력 확보 의무, 기업 및 단체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안전약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및 지원상담원 양성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14조).

제10조(피해자 지원의 원칙) ① 국가 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등은 이 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을 차별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지원 기간과 범위·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국가 등은 피해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 등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구제절차와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등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정보를 관련 부처 및 기관 상호 간 공유할 수 있다.

아.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 등의 안전 관련 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13조).

자.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5조(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① 국가 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등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조사기구(이하 “독립 조사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립 조사기구는 예산 및 인사 등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④ 국가 등은 제2항에 따라 독립 조사기구가 발표하는 조사결과 및 정책개선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독립 조사기구의 조직, 구성, 조사의 대상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차. 국가 등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기억과 추모 및 안전사고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카.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안전영향 분석·평가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관리 및 평가제도를 도입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18조(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① 국가는 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전반적인 안전정책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의 실시 시기, 내용 및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① 국가 등은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역에서 국가표준에 입각한 안전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안전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되, 국제 기준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등은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등록·신고된 안전기준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의 설정 영역, 설정 및 변경 시기 그리고 설정 방식 등 안전기준의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안전영향 분석·평가) ① 국가 등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제정하거나 수립할 때에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에게 피해자 및 안전약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21조).

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2조).

4.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기타 조치

가.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상한액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 가슴기살균제참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옥시 법인은 2016년 검찰의 대대적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재판이 시작되자 뒤늦게 1-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한해 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1500억 원 가량의 최종배상안에 따라 합의를 추진해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옥시의 본사가 있는 영국에서 가슴기살균제참사가 발생했다면 징벌적 배상 외 매출액의 10%인 1조 8천억 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음. 또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천문학적 배상액에 법인 존립 자체가 위협 받았을 것입니다.

- 실제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기도 전에 약 17조 원을 들여 피해 배상에 나선 반면 배출가스 조작이나 화재 결함 등으로 문제가 된 독일 자동차업체들은 한국 소비자에 대해 특단의 배상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았습니 다.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고자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에 전보 배상 책임에 국한되거나 그 책임조차도 묻기 어렵다면, 이 같은 우리 법제로는 기업들에 가슴기살균제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환경보건법 등에 개별 입법돼 있으나, 이를 징벌적 배상 개념으로 종합해 별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 배상 책임 강화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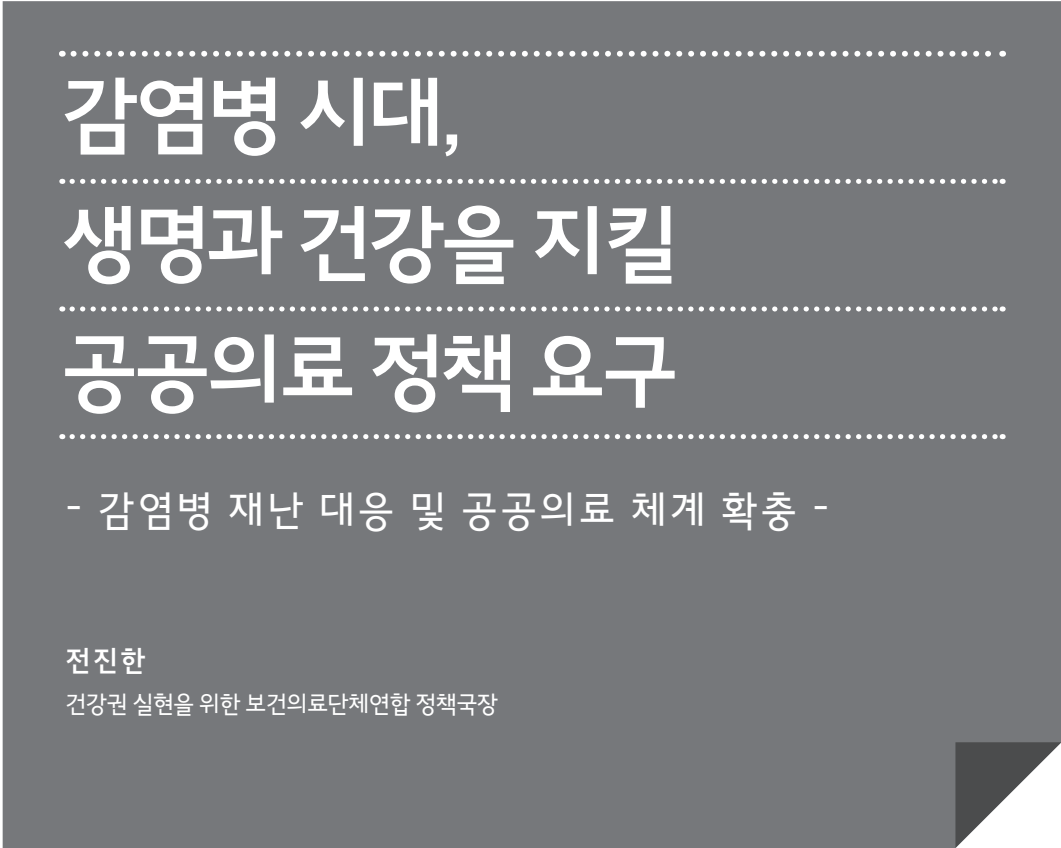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현행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 정보 관리 등 소비자 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우선 적용토록 해야 하며, 나아가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등 집단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하고 가해기업들이 사실관계 입증토록 책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집단소송을 관할하는 법원도 피고인 가해기업의 본사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관할을 풀어서 해외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의 소송 허가 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맥도널드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BMW 화재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늦장 대응과 가해기업들의 책임회피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배상법과 함께 집단소송제도 소비자 일반 분야로 우선 적용하고, 집단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폭넓게 확대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도입안에서 기존 증권관련 분야에서 ▲ 제조물책임, ▲ 부당 표시·광고행위, ▲ 식품안전 등 6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2019년 9월 당정 협의로 적용 범위 제한을 없애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에서조차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여당 모두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개별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소액으로 치부되는 문제, 까다로운 소송 제기 요건과 복잡한 절차, 비싼 소송 비용, 입증책임 한계, 소송기간 장기화 우려 등으로 정작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 소비자가 적은 상황입니다. 특히 법원이 소송 허가를 결정할 때, 피고 측이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해 소송이 수년간 지연되면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본안사건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안 사건 재판부가 즉시항고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법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제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1.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

한국은 초기방역에 성공하여 지금까지도 비교적 적은 수의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대응은 명백히 실패하였음. 유행시기마다 외국과 비교해 매우 적은 수의 확진자 발생으로도 쉽게 병상과 인력이 모자라는 일이 반복되었음.

1) 공공병상 부족

- 의료자원이 쉽게 포화되어 병상대기 환자가 속출했고, 자택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해왔음.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늘 먼저 희생되었음. 정부는 병상이 부족하면 요양병원·요양원·장애인시설의 확진자들을 ‘코호트격리’시켜 집단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했음. 공공병원이 전담병원이 되면서 저소득층, 행려·노숙인, 이주노동자, HIV 감염인 등은 쫓겨나 의료공백 속에 생명과 건강을 잃었

음. 취약계층이 아닌 대구의 17세 정유엽군 같은 사람들도 의료공백 속에 희생되었음. 특히 이번 겨울에는 심정지·심근경색 같은 응급·위중환자들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음.

- 한국은 병상이 모자라는 나라가 아니라 '과잉병상'의 나라임. 인구 대비 OECD 평균의 2.6배나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음. 예컨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은 이름 있는 전 세계 병원들을 병상 수 순위로 나열할 때 전부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초대형병원들임.

- 하지만 이 '과잉병상'이 대부분 민간병원이라는 것이 문제임. 공공병상의 OECD 평균은 약 75%이지만, 한국은 10%에 불과함. 나머지 90%의 민간병상은 지난 2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거의 나서지 않았고, 10%의 공공병상이 70~80% 코로나19 환자를 떠맡았음. 적은 수의 공공병원들이 팬데믹을 온 몸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 의료역량은 역부족이었음. 반면 대형민간병원들은 비응급·비중증 환자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돈벌이를 계속해왔음.

2) 간호인력 부족

- 공공병상이 모자랄 뿐 아니라 의료인력이 부족해 의료대응 역량이 늘 한계에 부딪혔음. 병상부족은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부족과 동의어인 경우가 많았음. 정부가 발표한 잔여 병상 숫자에는 매번 '허수'가 많았는데 이는 대개 인력 부족 때문이었음.

- 한국의 인구 당 활동간호사는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고, 병상 당 활동간호사 수는 5분의 1 수준임. 적은 인력으로 인한 살인적 노동강도 때문에 간호사들이 건강을 잃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적지 않았음. 그래서 한국은 신규간호사 이직률이 50%에 육박하고 숙련 간호사가 특히 부족함. 이런 와중에 팬데믹이 발생하자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간호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음.

- 한국에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주로 민간중심 의료 때문임. 병원은 노동집약적 사업장으로 인건비 비중이 45% 가까이 됨(다른 주요 산업 인건비 비중은 약 6%). 그래서 병원자본은 이윤추구를 위해 간호사를 적게 고용하거나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데 혈안임. 즉 활동간호사가 적은 것은 간호사 배출이 적어서가 아니라 병원이 고용을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임. 한편 적은 수의 공공병원들도 정부가 재정긴축으로 인력에 투자하지 않아 적은 수의 간호사를 고용하고 있음. 이 때문에 공공병원의 상황도 민간병원에 비해 그다지 낫다고 하기 어려운 형편임.

2. 상시적 재난 시대, 공공의료 확충은 생존을 위한 과제

- 코로나19 사태는 끝나지 않았고, 가까운 미래에 신종감염병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최근 감염병 유행주기는 짧아지고 있고 팬데믹이 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는데, 특히 2010년 이후 그 주기는 더욱 짧아지고 피해규모는 커지고 있음. 그 이유는 열대우림의 농축산업을 위한 파괴, 공장식 밀집형 가축사육 때문임. 또 기후변화가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을 부추기고 있음. 과학자들은 팬데믹이 약 3년에 한 번씩 찾아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음.

- 한편, 전 세계적으로 수십·수백년 만의 폭염, 산불, 홍수, 허리케인, 한파 등이 나타나는 등 기후 재앙도 빈번해지고 있음. 기후위기는 감염병 뿐 아니라 여러 건강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이미 대기오염으로 한 해 7백만 명이 사망하고 있고, 식량생산 감소로 기아가 늘고 있음. 가뭄과 홍수로 수인성 감염병이 늘고 있으며, 폭염으로 열관련 질환과 심혈관계·신장질환 등이 늘어나고 있음. 극단적 기후로 사고와 사망도 늘고 있음. 이런 건강위기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임.

- 이런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은 앞으로 인류가 맞닥뜨리게 될 상시적 재난 시대의 전조일 수 있음. 초기방역을 잘 하고도 코로나19를 건디지 못하는 수준의 공공의료 체계로는 앞으로 재난에 적응해 살아남을 수 없음. 따라서 공공의료 확충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과제임.

- 재난에 적응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공공의료가 필요함. 보건의료 영역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약 5~15%를 차지하고 있음. 이 중 불가피한 의료행위는 줄일 수 없지만, 불필요한 과잉·낭비의료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한국과 같은 영리추구적 민간의료체계에서 이런 낭비가 돈벌이가 되므로 감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한편 예방은 돈벌이가 되지 않아 자원이 거의 투자되지 않고 있음. 예방 중심의 공공의료를 확립해야 대다수 사람들의 질병을 줄일 수 있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를 만들 수 있음.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영리화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함.

3. 시민사회 공공의료 정책 요구

1) 공공병원을 5년 안에 20%까지 확충

나라다운 나라는 ‘공공병원 꼴찌국가’에서 공공병원 최소 두 배(전체 병상의 20%)확대로 : OECD 평균 75%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5년 안에 최소한 20%에 도달하도록 공공병상을 늘려야 함.

(1) 공공병원 신축·증축, 민간병원 공공화

① 신축

- 내가 사는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다면 설립을 : 70개 중진료권 중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곳(28개 지역)에 모두 공공병원을 2개소 이상 신설해야 함. 예컨대 울산, 광주 같은 대도시에 공공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함. 최소 2개의 300~500병상 급 공공병원을 세워야 함.

- 공공병원이 부족한 곳에 확대를 : 70개 중진료권 중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있는 곳(42개 지역)들도 모두 단 1개소가 있을 뿐임. 공공병원을 최소 1개 이상 더 신설해야 함. 예컨대 대구, 인천 같은 대도시에 거점 공공병원이 단 하나임. 300~500병상 급 공공병원을 하나 이상 더 늘려야 함.

② 증축

지방의료원의 경우 대부분 30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공공의료기관이면서 300병상 미만인 35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모두 300~500병상으로 증축해야 함.

③ 공공화

민간병원들을 적극 매입해 공공의료기관으로 만들어야 함.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는 민간의 과잉 병상은 통제하고 공공병상으로 전환해 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2)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라져야 함. ‘제도 개선’을 해도 경제성 평가라는 본질이 바뀌지 않음.

- 사람의 목숨 비용을 노동생산성으로 매기고, 가족의 슬픔도 값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임²⁾. 이런 평가방식 자체가 문제이며 일부 조정하고 개선한다고 해결되지 않음.

2) 2014년 세종충남대병원 건립 예타보고서는, 응급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① 노동력 손실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 ② 가족이나 친지의 고통과 슬픔의 비용으로 계산했음. ① 노동생산성 감소 비용은 = 기대여명 x 남은 수명에서 기대되는 총임금의 현재가치, ② 가족과 친지의 슬픔의 비용은 사망은 1억1607만원, 중상은 3370만원으로 계산했음. (2009년 기준)

- 기재부 중심 예비타당성조사는 복지부 주도의 '건강영향평가' 등으로 대체되어야 함. 건강영향평가는 경제성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의 입지조건 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평가와 논의여야 함.

(3)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 신설

-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는 결핵,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마다 취약성을 보여 왔음. 공공병상·인력 모두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 자원들도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재난시기에 통합적으로 활용되지 못했음.

-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로 '공공의료관리청'을 신설해 재난 및 위기 시 전국적 의료자원 동원 역할, 공공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확립, 전달체계 정상화,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공공보건의료 인의 양성과 수련을 담당하고, 지역공공병원 재정지원을 하는 중심으로 만들어야 함.

2) 의료인력 확충

(1) 공적 고용으로 간호인력 확충

- 공공의료기관부터 환자당 최소 간호사 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한 간호인력을 정부 책임 하에 고용해야 함. 충분한 간호사 인력 확충을 통해 간호간병서비스를 공공병원부터 전면화해야 함.

-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해결책을 고수해왔으며, 공공간호대학 신설(지역공공간호사 제도) 등의 방안도 제시되고 있음. 하지만 매년 많은 간호사가 배출되며 한국에 면허간호사는 적지 않음. 문제는 병원에서 일하는 활동간호사가 적은 것임. 필요한 것은 정부가 간호대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공공병원부터 간호사를 충분히 고용하는 것임.

- 의료의 질은 충분한 인력의 수와 정비례 관계이며 충분한 인력 고용이 곧 공공성 강화임. 공공의료기관이 충분한 인력을 갖춘 양질의 병원이 되어 민간병원에 표준을 제시해야 함.

(2)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병상의 90%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이 인력을 늘릴 의지가 없는 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임. 이는 재정 소요도 없고 오직 정부가 민간

병원의 과도한 이윤추구를 통제할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가능함. 지금도 수도권 대학병원들은 막대한 흑자를 남기고 이 돈으로 분원 설립 러시에 뛰어들어 5년 안에 5000병상을 늘릴 예정임. 노동자를 쥐어짜 축적한 남아도는 병원자본 이윤으로 간호사를 더 고용하고 처우를 개선하도록 국가가 강제해야 함.

-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을 제정 국회동의청원이 10만명을 달 성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이런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

(3) 국공립의과대학 활용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 양성

- 공공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충분한 인원규모로 신설하고 기존 국립의과대학 정원을 50% 늘려, 이 인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양성하고 졸업 후 20년간의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의무화해야 함.

- 문재인 정부의 '지역의사제'는 사립의대와 민간병원 민원수리·특혜로만 귀결될 수 있는 정책이었음. 의무복무를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게 할 경우에 필수·적정진료 수행에 국가양성 의사가 활용되리라 장담할 수 없음. 정부의 공공의대도 단 49명 정원 한 곳 신설이라는 보잘 것 없는 계획이었음.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인 80%로 올려야 함. 필수의료는 건강보험으로 조속히 포함시키고, 간병비용까지 포함한 모든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상한제를 실시해야 함.

-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는 완전히 해소해야 함. 문재인정부 들어 보장성은 2020년 65.3%로 임기동안 단 2.6%p 오르는데 그쳤는데 이는 혼합진료 금지 같은 비급여 통제, 민간중심 의료공급 체계 개혁 없이 점진적 급여화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 다시 드러난 것임.

-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함. 현재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는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이를 전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0%까지 늘려야 함.

4. 각 캠프 보건의료 공약 평가

현 시점(1월 14일)까지도 모든 후보가 체계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각 후보별로 일부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은 것을 바탕으로 평가하였음³⁾.

1)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후보는 약 24개 공공병원 신축 등 공공병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환영할만 하고,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단 3개소를 신축한다는 계획과 비교하면 진일보임. 하지만 10% 공공병상을 약 12%로 늘리겠다는 정도의 약속이기 때문에 감염병과 기후라는 상시적 재난 시기에 비춰 충분하지는 않음. 더 의미 있는 수준의 확충 의지를 보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제도적 방안도 내놓아야 함.

- 간호인력 확충은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매우 추상적 수준에서 제시되었음.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지역공공간호사제' 같은 배출확대·의무복무 정책은 간호사 노동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음. 공공의료기관부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간호사 고용을 늘리는 것이 해법임. 그리고 민간병원에는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 같은 명확한 해결책을 약속해야 함.

-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을 발표했는데, 공공의대는 100명 이상 정원으로 여럿 늘려야 하며 의대 정원도 대폭 늘려야 함. 또 국가 양성 의사를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해야 함.

- 이재명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음. 그러면서 탈모약 급여화를 내세웠음. 이 정책 자체를 찬성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탈모약 정도로 등장하는 건보재정 고갈론은 황당하)지만, 현 집권여당의 대선후보 약속 치고는 지나치게 보잘 것 없음.

-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는 언급과 행보도 하고 있음. 특히 기업들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규제샌드박스과 규제자유특구를 더 확대하겠다고 했음. 규제샌드박스는 그간 보건의료 영역에도 적용되어 영리화·규제완화의 수단이 되어왔음⁴⁾. 이재명 후보는 실

3) 모든 세부적 정책을 평가하지는 않았고, 큰 틀에서 공공의료기관·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다루었음

4) 정부는 이 제도로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허가하고, 기업을 위한 원격의료나 무분별한 유전자검사 시장화를 부추겨왔음.

손보험 청구간소화 명목의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도 지지하고 있음.

2) 국민의힘

- 윤석열 후보는 감염병 시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약속이 없으며, 의료인력 확보 정책도 부재함.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일부를 약속했지만 협소하며 전체 의료비 보장성 강화 약속이 없음.

- 윤석열 후보에게 두드러지는 것은 의료영리화임. 재난 시기 치뤄지는 선거임에도 공공의료는커녕 '의료가 미래신산업'이라며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입장임. '모든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하면서 생명·안전 규제완화를 시사하고 있음. 그러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했음. 공공의료가 취약한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대기업과 대형병원 영리행위를 돕기 위한 의료영리화임.

3) 진보정당

(1) 정의당

- 심상정 후보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분명한 공약이 부재함. 마찬가지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약도 부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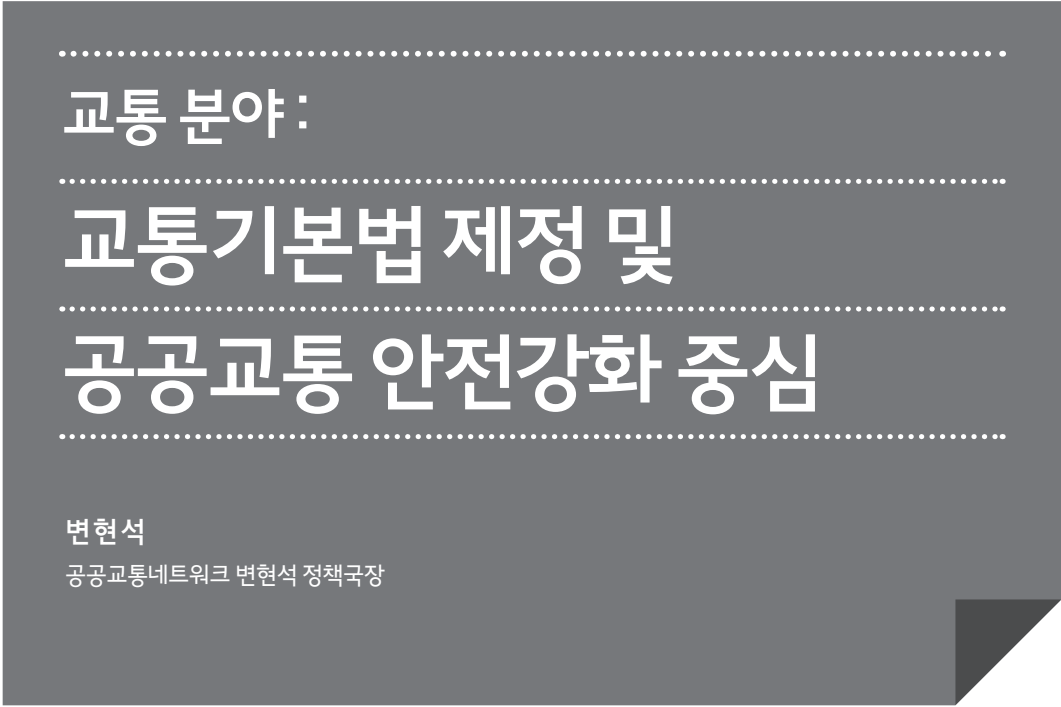
- 비급여 포함 의료비 백만원 상한제로 무상의료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은 매우 환영할만함. 단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재원으로 삼지 말고, 기업주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고 국가가 더 많이 책임져서 현실화시켜야 함.

(2) 진보당

- 김재연 후보 역시 공공의료기관·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체계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음.

4) 국민의당

- 안철수 후보는 공공의료 정책을 내놓지 않았으며, '바이오산업 육성'을 언급한 정도임.



1. 교통기본법 제정으로 안전강화 및 기후위기 극복

교통기본법에서 제안하는 ‘공공교통’은 단순히 ‘개인교통’, ‘대중교통’의 수송단위의 차이를 넘어서 운영방식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 공공성에 주목. 교통수단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요소가 공공교통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공공교통이 단지 운영상의 공공투자의 유무, 수단으로서의 구분이 아닌 교통수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효과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전환.

기존 개인교통/대중교통 등 수단 자체의 특징을 벗어나,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이동권의 공익성이라는 부분,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립.

1) 목적

- 교통이동권을 기본권으로 정의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근거를 만들
- 지역간 교통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함

-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함
- 교통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함

2) 필요성

(1) 실태

- 경제위기와 코로나 사태로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 증대
-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동하는 사회구조의 변화
- 교통사고로 후천적 장애인 증대와 보행자 및 고령자 사고율 최대
- 국가 온실가스 비중에서 교통수송부문의 도로 배출원이 14%를 차지

(2) 지금까지의 문제의식

- 현재 교통정책은 전체적인 기본방향과 원칙 없이 개별 업종/부문별 진흥체계와 규제정책으로 나열되어 있는 형태임.
- 한국의 교통관련 법제는 개별법 중심의 체계로 교통정책의 기본원칙과 더불어 이동약자들의 교통권 보장과 교통정책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는 교통기본법이 없음.
- 교통의 운송수단 간의 위상체계와 인프라 정책, 그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전환의 방향과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 등과 같은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기초/광역/초광역을 넘어서는 효과적인 광역교통기구의 부재에 따른 유기적 연계 수단의 교통정책의 한계가 발생함.
- 운수노동자에 대한 적정인력과 노동조건, 안전운영의 문제 해결점 부재
- 운수 종사노동자, 이용자 등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협치기구 부재
- 기존 대중(공공)교통인 버스, 지하철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공공성 확보와 통합적인/유기적인 연계에 대한 관점 부재

(3) 법안 기대효과

- 교통기본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으로, 전체 교통량을 감축하고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Modal Shift)에 따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
- 교통약자의 개념을 성문화하며,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등을 편입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함.
- 이용자(비용부담자)와 종사노동자의 제반 조건을 중심으로 교통격차의 해소, 안전운영 노동조

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영형태 및 운영구조를 개선함.

3) 주요 내용

- (정의) 교통이동권, 공공교통, 교통격차, 교통전환 등에 대한 정의 명시
- (국민의 권리) 거주지역이나 경제적 차이, 연령이나 신체의 특징에 구애받지 않는 이동을 보장 받을 권리 명시
- (보행권) 안전하고 장애물 없이 걸을 수 있는 권리와 보행환경 조성 및 유지에 대한 의무 명시
- (교통약자) 기존 <교통약자이동증진법> 외에 공공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을 포함 (제10조에 따른 교통최저기준 이하 지역의 주민)
- (기후위기 목표) 온실가스 저감목표 중 수송분야 내용, 오염물질 저감목표 등 명시
- (교통최저기준) 국가가 교통최저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 (공공교통인프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교통인프라 확충의 포괄적 책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교통인프라 확충을 지원해야 하는 재정적, 제도적 책임 명시
- (공공교통이용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교통 이용확대 위한 시책 의무명시
- (자동차통행감축목표 설정) 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른 자동차통행감축 목표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목표 설정 의무화
- (재원마련)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결산분의 30%범위 내 재정우선 지원 명시
- (고용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 명시
- (교통데이터의 생산과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가장 최신의 교통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하며, 정책수립과정에서는 반드시 공개데이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 시민과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정책참여 보장
- (주민제안제도) 교통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의무화(주차장 감축/변경, 차없는 거리 운영 등). 적절한 절차 마련 명시

* 교통전환을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방안(김상철)

2. 시민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법 전면개정

1) 철도안전법의 연혁과 개정 필요성

2003년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준비하게 되고, 그 결과 2004년 10월 철도안전법 제정, 이 법에 의하여 중앙 정부에 의한 체계적 철도안전 관리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 국내 19개 철도 운영사는 공통적으로 적용 받음.

2012년부터는 서구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방식을 벤치마킹한 '철도안전관리체계' 도입. 하지만, 형식적 모양새만 갖추고, 노동자 참여 배제, 구시대적인 안전조직문화로 인해 담당자들의 관료적, 행정적 업무로 전락. 이로 인해 한국의 철도안전관리 체계는 노동자들이 매뉴얼만 지키면 되는 수동적 객체이자, 사고가 나면 책임과 처벌의 대상이 됨.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종사자에 대한 처벌 위주의 통제적 노무 관리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드는 시스템임.

또한 이 법에 의한 '철도차량·시설의 안전기준 마련'은 규제완화, 비용절감을 위한 운영사들의 노력을 정당화해주는 구실이 되고 있으며, 차량검사체계의 경쟁 구조 도입 등 안전의 시장화, 상품화 조장. 철도 산업에서의 시장 경쟁을 강화하고 있음. 이로 인해 철도산업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음.

2) 주요 개정 요구

- 철도안전 실현의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철도안전의 기본원칙'을 신설해야 함
- '철도종사자대표' 및 '철도안전 이해당사자' 개념 도입하여, 국가-철도운영자-종사자의 상명하복식 개념에서 벗어나야 함.
- '안전관리체계의 기본 요건'을 신설하여, 현행 안전관리체계의 위상과 기본적 내용을 담아, 안전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철도종사자대표' 참여를 보장하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되도록 해야 함.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가 안전 감독기구'를 도입하여, 철도안전 이해당사자가 유기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철도안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철도안전심의위원회' 및 '철도안전경영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 이해당사자와 상시적으로 협의하도록 해야 함.

- '철도안전감독관' 및 '명예철도안전감독관' 도입하여, 사업장 내 위험 통제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촉진해야 함.

-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처벌 조항, 징계 권고 조항을 삭제해야 함. 이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일한 제도로, 시스템에 의한 사고 방지 중심이 아닌, 처벌 중심의 사고처리 체계로 종사자의 범죄화로 해결함. 감시카메라(영상기록장치)를 통한 종사자의 업무 감시로 인권유린 및 처벌중심 해결의 수단 폐지.

- 철도차량 내구연한제를 도입하여, 수명을 넘긴 노후 전동차가 폐차.

3. 공공교통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제도화

- 국가의 주요 공익복지서비스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의 원인자부담원칙을 신설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토위 계류 중. 법안 통과와 차기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교통 기본법에서 개념 정리. 도시철도법 산입)

※ '20년 무임수송손실은 코로나19로 수송인원감소로 일시적 감소 됨

- 무임수송 손실,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 등으로 누적된 적자와 코로나19로 심각한 재정위기 봉착 → '20년 1조 8,236억 원 당기손실 발생 (6개 기관)
- 노후시설 투자, 지하철 요금 동결(6년)로 재정부담 가중 → 특단의 조치 필요
 - 지난 5년간 투자비 급증 → 향후 3년 연평균 16,753억 발생 : 재정 부족 심화
-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위기의 핵심 원인은 정부정책에 따른 제도적 손실과 안전·서비스 투자비 증가임 → 근본적 해결책 마련 시급
 - 지난 5년간 무임수송 손실 등 제도적 손실이 당기손실 대비 약 48% 수준임
 - ▶ 당기손실 57,969억 원, 무임수송손실 27,693억 원

- 손실분은 운행안전 예산 미반영, 안전운행인력 감축 등 결국 대형사고 위험성 증가.

- 단순 재정 지원의 수단적 접근이 아닌 교통기본권의 사회적 실현, 법정 복지서비스의 정부 수익자 부담을 근거로 함.

4. 철도 다단계 위탁운영청산(민간투자사업 운영사)후 공영화

- 2018년 현재 국토부가 민자 유치 사업(운영중 :6, 건설중 :3, 계획 :2)은 총 11곳임.
- 그밖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민자 유치(9호선 1단계 등) 또는 위탁(9호선 2/3단계, 김포도시철도 등) 방식을 통한 도시철도 운영 사업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이 같은 유치 및 위탁은, 전통적으로 공기업 철도운영사 중심의 철도산업에 새로운 민간 철도운영사의 진출을 돕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행사 구성은 건설/금융 기업들로 이루어짐.
- 경쟁입찰은 입찰 가격이 낮을수록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 때문에 저가 입찰을 부추김. 저가 입찰은 수탁자의 채산성 악화를 유도하여, 운영에 있어서 안전성을 떨어뜨리며, 입찰자들 내부의 구조 개악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음. 이는 안전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를 어렵게 하며, 기존 공적재정사업 운영방식보다 안전에 취약함. 수탁사 수익구조의 비용 절감 방식이 인건비 중심이기 때문에 적정 안전인력 미확보, 운행인력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귀결됨. 재정사업을 통한 직영방식을 통하여 안전과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가 필요.

5. 화물, 택배, 플랫폼, 택시 노동자 안전위협과 중대재해의 발생 요인 제거

1)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임제 확대요구

{개요}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산업의 최저임금제’. 2020.1.1.~ 시행 중.

{배경} 다단계 하청 구조로 화물노동자들은 ‘밀바닥 운임’을 강제받고, 생계 유지를 위해 일평균 13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과적과 과속 등 위험한 운송행위를 반복. 때문에 화물노동자가 받는 운임이 도로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정하고,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화물차 사고의 핵심 원인인 과로, 과속, 과적 같은 위험한 운송행위를 줄여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

{근거}

이광훈, 김태승(2017) :

운임 1만 원 증가 → 사고 횟수 3.19% 감소, 동일거리 운행시간

1시간 증가 → 사고 횟수 16.98% 감소.

* 이광훈&김태승, (2017), 한국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분석, 로지스틱스연구.

백두주(2021) :

안전운임 시행 1년 후 실제운임 3.6% 상승 → 과적 경험 9.7% 감소, 과속 경험 11% 감소,

졸음운전 경험 20.8% 감소.

* 백두주, (2021), 한국 안전운임 시행효과 분석 및 지속가능한 제도시행을 위한 조사결과, 한국안전운임연구단.

{ 세계 현황 }

- 적절한 운임을 보장해 도로 안전을 도모하는 안전운임제는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음.

- 미국 캘리포니아 항만트럭 운임, 브라질 최저화물운임, 캐나다 밴쿠버항 트럭운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안전운임 등 시행 중.

- 최근 미국 시애틀과 뉴욕 : 앱을 통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플랫폼 노동자)에게 안전운임과 유사한 방식으로 최저보수를 보장하는 제도 도입.

- 국제노동기구(ILO) <운수부문 양질의 일자리와 도로안전 증진을 위한 지침>(2019) : 안전과 운임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모든 화물 및 여객 상용차를 포괄해 운행 외 모든 노동시간에 대해 보상하고, '생활임금 수준'의 구속력 있는 최저운임을 법제화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

{과제} 현재 안전운임제는 ▲시행 기간은 2020. 1. 1.~2022. 12. 31. 의 3년 일몰로, ▲적용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음. 전제 41만 대 가량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약 2만6천대(6.5%) 정도에 불과한 차량에만, 그것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서는 도로안전 증진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음.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함.

2) 택배, 플랫폼에 안전운임제 확대적용

{개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대상을 택배와 음식배달과 같은 플랫폼 산업으로 확대 적용해야 함.

{배경} e-커머스의 성장,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배달 산업의 성장에 따라 배송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늘어나고 있음. 여러 요인이 복합적이겠으나 택

배노동자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이나 배달라이더의 위험한 운송행태를 초래하는 핵심은 불합리하고 낮은 수수료임.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동시간 단축이나 노동강도 완화, 사고 감소는 요원함.

* 2020. 한 해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 2020. 11.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대비 9.0% 증가. (국토교통부)

{근거} 교통법규 단속 강화, 안전 인식 확산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사업용 화물차 사고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기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도입. 여타 운수산업도 다르지 않음. 반복되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나 배달노동자 사망 증가는 정부의 접근처럼 교통법규 단속 강화나 택배 원청사의 자발적 노력을 독려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줌.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의 노동의 대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안전한 운송을 보장할 수 없음.

(세계 현황) 최근 뉴욕, 시애틀 등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앱기반 운전자를 위한 최저보수 기준을 도입. 한국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같이 비용 회수 및 모든 노동시간 보상 원칙을 적용.

* 경향신문, 미 시애틀시 우버·리프트 기사에 최저임금 보장... 뉴욕에 이어 두 번째. (2020.10.1.)

3) 온전한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 노동시간 정상화

{개요} 택시 운전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규정을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서도 즉각 적용

{배경}

- 택시의 불친절,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납금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2021. 1. 1.부터 전국적으로 일반택시의 월급제를 시행함.
-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일반택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은 2021년부터 시행되고, 서울 이외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서울 외 택시 사업주들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일 2.5시간이나 3.5시간으로 정해 월 60~90만 원만 지급하고 있음.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택시노동자들은 불법 사납금제나 지입·도급제로 회기하여 불법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

{근거}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시행일 결정 기준으로 ▲시행 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

액,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음. 안전하고 원활한 택시 서비스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하루빨리 택시 월급제가 온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를 당장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함.

- 시행지역의 성과 : 서울 지역의 경우 택시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50~300만 원 이상으로 충분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사업구역별 매출액 : 차량 호출 플랫폼의 성장으로 택시는 공차율 감소, 배회영업에서 대기영업으로 전환되어 운송경비가 절감되는 등 사업주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음.
- 근로시간 변화 : 택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 2.5~3.5시간으로 정해지고 있어 실제 근로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통계자료 및 출처 문의(공공교통네트워크)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대책 마련

장동엽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토론

.....

.....

.....

.....

.....
시민사회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해결방안 및 공약

.....
안전, 기본과 원칙을 확립하고
.....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나라를
.....
만들겠습니다.
.....

박두용

더불어민주당 국민안심신안보위원회 위원장

I. 이재명 후보의 생명·안전사회를 위한 기본 원칙과 국정철학

○ 국민생명·안전에 관한 입장

이재명 후보께서는 ‘국민안전’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이며, 국민 안전은 선언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인식

우리나라는 경제적, 기술적 수준에 비해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노동안전은 산재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취약합니다.

우리나라 안전, 특히 노동안전보건 수준이 낮은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한 책임 부재 사회(안전책임 부재사회)’ 또는 ‘안전에 관한 책임을 말단이나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사회(안전책임 전가사회)’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안전책임 부재사회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거나, 책임을 묻고 싶어도 물을 수 없는 사회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고는 발생했는데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안전책임 전가사회란,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말단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심지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위와 같은 사회가 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안전에 관한 국정운영 기본방향

이재명 정부는 전쟁과 테러와 같은 전통적 안보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을 **국가안보차원으로 격상**시켜, **대통령이 직접 안전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부처별 댐질식 처방이나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안전만을 떼어 내어 어느 한 부처로 모을 수도 없습니다**. 안전은 각 부처의 고유기능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산된 체계에서는 각 부처의 안전 기능을 강화**하더라도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최근 위협의 대형화, 복합화, 고도화, 집적화됨에 따라 부처간 **고도의 협력, 조율 및 조정 없이는** 예방은 물론 사고대응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방-대비-대응-복구'라는 종합적인 체계에서 안전정책 수립과 추진은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리체계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전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실에서 부처간 협력, 조율 및 조정을 해 왔습니다만, 안전에 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각 부처의 협력 조정뿐만 아니라 확고한 안전에 관한 국정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통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재난 및 국민안전도 국가안보차원으로 격상시켜 대응한다는 신안보 개념*에 의거하여, 재난대응뿐만 아니라 국민안전 전반에 관한 대통령의 컨트롤 기능을 강화해, 안전이 결코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비전통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와 개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강조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등을 국가안보의 차원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새로운 안보의 개념

II. 시민단체가 제안한 ‘생명·안전 10대 우선과제’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

0. 생명·안전사회 기본원칙

이재명 후보는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라는 점”,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가 제시한 ‘생명·안전사회 기본 원칙’에도 원칙적으로 적극 동의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기본원칙이 실제 정책과 행정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단체가 요구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10대 과제’에 대해서도 그 취지에 맞게 목적하는 바와 국민의 요구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 차별과 불평등 없는 생명과 안전

○ 제안 사항

● 요구/ 제안 사항

-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 여성, 이주노동자, 현장실습생, 방문및 이동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약속

인적 사회든 물적 시스템이든 균형이 깨지면 사고가 발생하며, 격차가 크면 클수록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전사회는 기본적으로 ‘균형(balancing)’과 ‘격차해소’입니다.

안전 관련 법제도에 있어서 적용제외나 예외가 있는 부분은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나 예외를 단계적으로 최소화하여 모든 사업장과 모든 노동자가 필요한 안전보건법상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새롭게 출현한 플

랫폼 신종 특수 노동자군처럼 아예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용이 어려운 직군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고용구조나 신종 산업구조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산재에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노동안전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에 전담부서 신설이나 전담 기능을 명확히 부여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안전문제는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빈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최저가 입찰제,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과 공사기간 단축을 들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3가지의 제도와 관행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기업도 국민안전을 무시하고는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고질병인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의 관행을 임기 내에 완전히 뿌리 뽑아 근원적인 건설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최저가 입찰제로 인한 문제점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현장의 화재, 붕괴, 추락 3대 사고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확대하여, 일단 현장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작업중지 기간만큼 공기가 연장되도록 하여 몰아치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초 하에서 건설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상병수당 도입

○ 제안 사항

● 요구/ 제안 사항

-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 및 별도 보상체계 개선
- 태아 산재보험 등 직업병 인정기준, 추정의 원칙 확대 및 승인 전 치료와 보상 등 심사승인 제도 개혁
- 산재 노동자 치료비 부담 제로화 및 재활 및 복귀를 위한 산재병원의 집중투자 및 공공성 강화
-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및 질병휴가제도 도입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약속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산재보험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개인사업자를 가장한 특수형태의 노동자나, 실습생이나, 인턴이나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 산재보험 적용’을 목표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만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산재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기능도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산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산재보험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산재보험을 건강보험처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발전방안, 합리적인 직업병 인정 및 보상기준, 2세(태아)에 대한 피해인정 및 보상기준, 상병수당과 연계적용, 선치료 후정산 등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산재보험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실질 적용

○ 제안 사항

● 요구/ 제안 사항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및 개정
- 감독행정 전면 개혁 및 노동자 참여보장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 중대재해 사고조사 보고서 공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약속

중대재해처벌법은 '21.1 제정되어 '22.1.27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 80%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하고, 5인 미만은 적용을 제외한 것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전과 같은 법과 제도는 예외 없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새로운 법령을 도입할 때에는 수급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시간을 주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소 영세기업의 안전역량과 수준이 향상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독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되어도 무리가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모든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안전보건은 감독행정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행정의 핵심 키워드는 '전문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감독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논의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립논의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바람직한 노동안전보건 행정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사고조사 보고서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고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고서 공개를 하기 어려웠던 개인정보를 침해 문제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검토하여, 이를 제외하거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 후, 적극적으로 사고조사보고서 등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제안 사항

● 요구/ 제안 사항

- 위험작업, 2인1조,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 법제화
- 중소기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포함 안전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확대
- 유해위험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을 위한 기간제법 개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약속

적정 인력의 투입은 사고 예방의 핵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험작업이나 과로사 예방을 위한 2인1조와 같은 사항을 일률적으로 법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과 논란이 있는 만큼, 우선 특정한 위험작업이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는 2인1조 작업의 권고지침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향후 법제도에 반영을 검토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중소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시범사업을 통해 그 타당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면 정

부이 지원사업을 확대하거나 정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안전체계 구축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전문인력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학 및 민간교육기관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확대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5. 과로사 예방 및 정신건강 보장,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위협의 외주화 금지

○ 제안 사항

● 요구/ 제안 사항

- 과로사 예방법 제정 및 실질 노동시간 단축 업종별 대책 추진
- 감정노동, 일터 괴롭힘, 직무 스트레스 예방체계 구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약속

과로로 인한 돌연사 및 자살 문제가 심각성에 동감하고 있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과로사 예방에 대해서는 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타당한 방법과 효과적 방법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과로사 예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정노동에 대해서는 일터 괴롭힘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와 특정한 가해자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로 구별하고, 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민사적 제재를 강화하여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작업중지권 보장

○ 제안 사항

● 요구/ 제안 사항

-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보장
- 노동자 참여권 전면 적용 및 활동시간과 권한 보장
- 노동부 전면 작업중지 명령 및 재발방지 대책 전 해제 금지
-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이행권고 강제등 법제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약속

산업기술 보호법이 과도하게 노동자의 알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이 보장되도록 꾸준히 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조건이 확보되도록 노동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안전활동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정한 사고,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화재, 붕괴,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중지를 확대하겠으며, 급박한 위험이 제거되거나, 안전이 확인될 때 작업중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독립적 사고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 및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 일정 이상의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사고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7.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피해자 권리 보장

○ 제안 사항

● 요구/ 제안 사항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피해자 인권보장과 지원체계 구축
- 소비자 집단 소송제, 징벌적 피해 보상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약속

생명안전기본법은 법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보장 및 정신적 피해(트라우마)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자 집단소송은 소비자 보호제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징벌적 배상제도는 아직도 찬반 논란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감염병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체계 확충

○ 제안 사항

● 요구/ 제안 사항

- 재난 시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
- 공공의료 강화 위한 '공공의료관리청(가칭)' 설립
- 간병 국가 책임제 도입
- 영리적 치료행위, 의료기기 · 의약품 퇴출
- 의료인력 확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약속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하여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이라는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감염병 대응 강화와 의료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 공공병원 확충의 일환으로 70군데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
- 지역별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 보건소 확충을 통해 방역은 물론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
- 중앙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신속한 설립 지원, 필요하다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확충

(2)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신설과 의대 신설
- 의대 정원 합리적으로 증원
-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 역학조사관과 같은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양성
-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3)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 병상동원체계 구축
-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병원간 진료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
-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공공의료와 의료 불평등 해소에 적극 활용

(4)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 전 국민이 자신의 주치의의를 두고 건강문제를 우선 상의하는 문화 조성

- 우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분들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온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

이와 함께 △어르신 영양돌봄,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등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취약자에 대한 복지강화와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간호·간병 통합 돌봄 체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돌봄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 환자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에 따라 간병수요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어느 지역에 살든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지방 병원부터 확산 전략을 세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일 것입니다.

-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참고. 시민제안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 비교

시민사회 생명안전 의제 네트워크	이재명 후보 공약 (주요 표현)
재난 시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아프면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가난이라는 굴레로,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다치고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나라,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 국민과 함께 끝내겠습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습니다.
공공의료 강화 위한 '공공의료관리청(가칭)'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 공공의료 전달체계 통합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
간병 국가 책임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가족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리적 치료행위, 의료기기·의약품 퇴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공약 제시 없음 - 단, 치료효과 없고 비싼 영리적 치료행위, 의료기기·의약품 퇴출에 당연히 공감함
의료인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대 신설 및 국립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9. 교통안전 강화

○ 제안 사항

● 요구/ 제안 사항

- 교통 기본법 제정
- 화물운송 택배, 배달 등 운송업 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적용 및 확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약속

이재명 후보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교통취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택배나 배달의 일상화로 이륜차 및 용달차 운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는 등 최근 새로운 교통안전 위협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택배나 배달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는 단지 양적으로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소위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구조에서 새롭게 등장한 안전문제이며, 교통안전과 노동안전이 복잡하게 얽힌 복합 안전문제입니다.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처럼 기술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안전 위협요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미래의 교통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rule) 및 기준(standard)이 필요하며, 새로운 규제(regulation) 방식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 택배, 배달 등 운송업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안전운임제 적용 및 확대를 포함하여 미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교통 기본법까지 포함한 법제도 개선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민안전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하고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대책

○ 제안 사항

● 요구/ 제안 사항

-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제정
-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및 정부 부처 역할 강화
- 화학제품 안전법에 전 성분 공개 표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약속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의 취급하는 설비에 대해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PSM 제도, 화학물질관법에 따른 화학안전관리계획서 제도, 산업부의 고압가스 안전관립법에 따른 SMS제도 등을 통하여 설비의 위험도에 따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설비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시설물안전법에 서 요구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설비의 검사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따로 떼어내,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산업단지내의 설비의 노후화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제도에 서 취급시설의 위험도와 설비 노후화를 고려한 위험도 산정과 그에 따른 진단 및 점검 주기의 설정을 고려하는 것 등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법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마찬가지로 화학물질 관리도 여러 부처의 기능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계되어 있어 하나로 관리를 완전히 일원화하는 것은 어렵거나 장단점이 있습니다(예: 화학물질 운송-교통부).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이재명 정부에서는 안전을 국가안보차원으로 격상시켜 대통령이 직접 총괄, 조정, 조율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화학제품 안전법에 전 성분의 공개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강화내지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시민사회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해결방안 및 공약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향해!

.....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 노동생명안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당에서 노동생명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표 김응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앞장섰다고 자임하는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답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년 상반기까지 통계를 확인해보니 김용균 이후 2년 6개월 동안 299명의 청년이 일하다 죽었습니다. 하루 평균 7명, 한해 2000여 명. 대한민국 산재사망 노동자의 숫자입니다.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한해 10만 명이 넘습니다.

세월호, 가슴기 살균제, 스텔라데이지, 그리고 작년 학동 건설현장과 올해 광주 화정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까지 시민참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으나, 사고를 예방하는 비용보다 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인명을 경시하는 후진형 참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 2의 김용균! 제 2의 이선호! 제 2의 김태규! 제 2의 이한빛, 제 2의 정순규, 제2의 김다운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국민을 안전으로부터 지켜내고,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정부와 기업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 죽음의 일터를 막고, 차별 없는 세상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0대 우선 과제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및 공약

1) 차별과 불평등 없는 생명과 안전

{ 입장 }

생명 and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차별과 불평등입니다. 불안정, 비정규 노동자, 여성, 이주, 영세기업 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평등과 차별이 있는 곳에서 산재사고 등 생명과 안전의 위협이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정의당은 차별과 불평등 해소야 말로 생명,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관련공약 }

-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기본권 보장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개정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추진(법제화)
- 평등수당 제도 도입 : 비정규직에게는 임금을 더 지급하여 소득보전

2)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상병수당 도입

{ 입장 }

그동안 정의당은 산재보험 사각지대와 원하청 격차 해소, 상병수당 도입을 지속적으로 공약으로 발표해 옴.

{ 관련공약 }

● 전 국민 산재보험

- 청구절차를 개선해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직접 산재 청구(선보장-후평가 시스템 도입)
- 특수고용, 해외파견노동자, 농민, 1인 자영업자 등 전 국민 산재보험 실시
- 감정노동, 공황장애, 심야노동수면장애 등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 중소기업 인허가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 강제 규정 도입
-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선해 균등보험료율로 전환

● 전 국민 상병수당

-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을 보장하는 전 국민 상병수당(소득 70%) 도입
- 유급병가 제도 의무화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실질 적용

{ 입장 } :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즉각 개정되어야 하며 배제되는 노동자와 시민 없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과 별도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관련공약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도입 등 개정

- 5인 미만 적용제외, 50인 미만 적용유예 등 삭제 전면 적용
-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조항, 양형절차 특례 도입
- 건설, 조선업 등의 발주처 공기단축 처벌, 건설현장 인접 장소 사고 등 적용 대상 확대

● 감독행정 전면 개혁 및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 산업재해 실질 감소를 위한 노동부 감독행정의 전면적인 개혁

- 중대재해 사고조사 보고서 공개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4)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입장 } : 정의당은 제대로 된 안전과 산재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생명안전 분야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어야 하며, 특히 이런 생명안전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사용되거나 외주화, 하청 등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공약 }

- 생명안전 분야 일자리 직접고용 원칙 적용
- 위험작업 2인1조 업무 적용, 생명안전 분야 적정인력 기준 규정 및 현실화
- 중소기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공공성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업종, 규모 무관하게 전면 적용
- 30인 혹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허용

5) 과로사 예방 및 정신건강 보장

{ 입장 } : 과로사 예방 및 정신건강 보장을 위해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시간 관련 각종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주4일제 도입, 연차휴가 확대, 생애주기 노동시간 선택제 등을 통해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을 줄여나가겠습니다.

{ 관련공약 }

- 주4일제 근무제 도입
- 연차휴가 25일로 확대
-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 생애주기에 따라 육아, 돌봄,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노동시간 구축

6)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작업중지권 보장

{ 입장 } :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현장의 업무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각종 산업공정 등에 대한 노동자 당사자 및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 관련공약 }

●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으로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 보장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정보의 예외 없는 비공개 명시 조항 삭제
산업기술 포함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 공개 금지 조항 삭제
비밀 유지의무 대상자 확대 조항 삭제

● 노동자,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작업 중지권 보장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조합(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권 보장 및 사업주 불이익 처우 형사처벌 법제화

7)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피해자 권리 보장

{ 입장 } : 정의당은 생명안전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각종 법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공약 }

- 피해자 인권보장과 지원체계 구축
- 안전을 규제완화 및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책이나 주요 사업에 안전과 생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안전영향 평가제도 도입 및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8)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감염병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체계 확충

{ 입장 } : 그동안 정의당은 공공의료 확대, 의료민영화 반대, 의료인력 확충, 모든 병실에 간호간

병서비스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공약으로 제시해 옵니다.

{ 관련공약 }

● 공공보건의료 강화

- 공공병원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공공병원 제외
-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 설치
- 공공병원 신축 및 증축 시에는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해 선진국 수준의 공공병원 인력 및 시설 기준 마련
- 시도 권역별로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국립대병원(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체계(지자체, 정부 지정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권역센터, 소방 등)를 구축. 권역 내 중진료권별로는 지자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우수병원, 보건기관, 일차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체 충족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
-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병원 설치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를 양성함은 물론, 더 나아가 공공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으로 확대 및 간병간호서비스 전면 제공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인구 천 명당 1명 이상으로 공중보건의료인력 단계적 확충. 비정규직 철폐 및 보건직 공무원으로 전환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의 모든 병동에 간병간호서비스 전면 제공

● 국민건강부 신설

- 국민건강부 신설로 부처별 건강정책 통합 및 강화,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광역시도마다 건강국 신설로 지역 보건의료정책 강화
- 모든 정부정책 및 프로그램에 건강영향평가 실시

●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실시

- 예비급여 및 비급여 포함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실시
- 효과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급여에서 탈락한 행위, 약제, 재료 등의 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 포함 금지

9) 교통안전 강화

{ 입장 } : 교통 및 이동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며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역시 기본권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공약 }

- 철도 종사자 대표가 참가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철도안전법 개정
- 화물운송 택배, 배달 등 운송업 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적용 및 확대
- 온전한 택시 월급제 시행
- 공공교통 이용하는 이용자 시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정책참여 보장

10)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대책

{ 입장 } : - 정의당은 꾸준히 화학사고와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공약을 발표해 왔으며 이번 대선 공약에도 포함될 예정(관련 공약 참고)

- 노후설비 정기조사와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제정,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와 부처 역할 강화는 적극 반영 하도록 하겠음

{ 관련공약 }

-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독성발현경로와 유해정도를 포함한 전 성분 표시 의무화,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위험성 구분
-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 독성발현경로, 유해정도, 노출 시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정보를 알리도록 의무화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도 공개하도록 하고 노동자들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발현경로와 유해정도 교육 의무화
- 산업단지의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강화 및 수용체 중심·민감계층 우선·주민 참여·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민 보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주변 지역 현장정밀조사 및 유해물질 지도 작성
- 사전예방 강화를 위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평가 실시 및 관리 강화
- 피해를 신속히 구제 받도록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 피해입증책임 전환,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 환경친화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지표 목표관리

.....
시민사회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해결방안 및 공약
.....
.....
.....

신나리
국민의당 부대변인

.....
시민사회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해결방안 및 공약

.....
위험사회, 생명안전이 우선인
.....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

장혜경

사회주의대통령후보 이백운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

0. 들어가며

사회주의대통령 후보 이백운 공동투쟁본부(이하 이백운공투본)은 여야 대통령 얼굴만 바뀌는 '정권 교체'가 아닌 '체제 교체'(system change)를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인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사회주의 후보인 이백운 후보가 출마하여, 사회주의 정치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을 말하기 전에 오늘 토론회 주제가 국민 생명안전인 만큼, 생명안전을 논할 때 꼭 짚어야 할 영역이 추가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에 있듯이 안전한 일터를 위한 과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과제, 교통안전 강화,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대책 마련 등은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생명안전 관련 영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핵문제(핵발전소와 핵무기 문제), 한반도 전쟁위기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 우리의 먹거리와 직결된 농축산 문제, 그리고 폐기물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생명안전영역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에 이백운공투본은 아래와 같이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이윤을 위한 체제를 생명안전을 위한 체제로 바꾸기 위해 헌법에 '안전권' 신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위험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알 권리, 사고 예방과 관리에 대한 대중의 참여 권리를 보장. 재난·참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

2.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한 일터

(1) 현황

[2020년, 11만 명이 죽고 다쳤다]

- 2020년 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882명, 산업재해 질병사망자는 1,180명으로 총 2,062명에 달함. 산업재해 사고재해자는 9만 2,383명, 질병재해자는 1만 5,996명으로 108,379명에 달함.
- 노동자 개인과 노동조합 모두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재해 발생을 안전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사업자를 처벌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의 위험작업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는 등 노동자에게 안전할 권리가 없는 한 노동자는 죽고 다칠 수밖에 없음.
- 특히 폭염, 한랭 등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따른 변화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예방을 위한 작업중지권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여전히 참사는 발생한다]

-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건물붕괴 사고, 2022년 1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 드러나듯 원청대기업의 다단계 하도급 방조와 조장,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은 언제라도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
- 참사 발생에도 원청, 관련 공무원 등 주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황은 다른 참사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아님.

(2) 정책

[안전한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시민의 참여권 보장]

- 위험에 대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 하청노동자에게 원청의 위험작업 지시를 거부할 권리 보장
- 폭염, 한랭 등에 따른 노동자 작업중지 보장
- 작업중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 금지(형사처벌 도입)
-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손실 보장 법제화
- 여성노동자 위험 발굴을 위한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
- 여성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참여권 확장
- 산업안전보위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확대와 현장출입권, 작업중지권 보장

[위험의 외주화 중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위험 전가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금지 대상 확대
- 중대재해 발생 공정과 사업장은 직접고용과 도급금지 명문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 재해와 사업자 의무위반의 인과관계추정 도입. 재해발생에 대해 관련 공무원 처벌조항 도입.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3. 주4일·30시간 노동제 확립

(1) 현황

- 코로나19 유행 전후 노동시간 단축 흐름이 확대되고 있음. 2021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스페인, 일본, 독일 금속산업 등 시범실시를 포함한 주4일제 도입 착수.
- 이런 배경에는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확대, 돌봄 확대와 성별분업체계 철폐 등 다양하고 중요한 문제의식이 있음.
- 한국은 OECD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가에 속함.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3위.
- 문재인 정부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2) 정책

- 임금 삭감 없고 생활 임금 보장하는 주4일 30시간 노동제 도입
- 노동시간 주권 보장하는 노동시간 단축
- 발암물질 2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심야노동 규제

- 하루 노동시간 규제를 전제로 노동시간 단축
- 보건업·운수업 등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업종 폐지로 안전하게 일하고 월 권리 보장
- 성평등한 노동시간 재구성(*남성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제를 없애는 것은 가사돌봄노동의 여성 전가를 없애나가며 성평등한 노동시간 재구성을 이루기 위한 기초)

4. 공공의료시스템으로 전환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1) 현황

[코로나가 드러낸 취약한 한국의료의 현실]

- 코로나19 유행은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을 드러냄.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7%로 OECD 평균(52.4%)의 1/10 수준. 공공병상 비율은 10%로 OECD 평균(71.4%)의 1/7 미만. 그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
- 의료영리화 경향이 강화되며, 서울의‘빅5’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과 함께 과도한 경쟁으로 과잉 검사 남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시행으로 환자 부담 가중.
- 보건의료 인력문제는 더욱 심각함. 2019년 한국 간호사 당 환자는 18.5명으로 미국(5.7명), 스웨덴(5.4명), 노르웨이(3.7명)보다 3배에서 6배에 가까운 노동강도를 견디고 있음. 이는 그 자체로 노동권 침해일 뿐 아니라 임신순번제 등 보건의료노동자 재생산권 침해로 이어짐.
- 정부는 코로나19 국면‘필수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공치사 뿐,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인력 확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 의료 격차 증대도 심각함.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의료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성인의 구의 비율이 약 3~10%. 빈곤층의 경우 약 8~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거나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

(2) 정책

[국가책임 공공의료(보건의료 공공화) 실현]

- OECD 평균수준 공공의료기관·공공병상 확충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관리청 신설, 공공의료 통합운영·지원체계 수립
- 17개 광역시·도 2개 이상 공공병원 확보, 70개 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24개 권역 1개 이상 공

- 공병원 확보로, 거점별 300~1000 병상 내외 지역거점 공공병원 신설
- 검역인력과 역학조사관 확충
- 공공의료인 양성과정 신설(국립의과대학의 공공의료 인력 배출 거점화)
- 백신과 치료제의 공공개발
- 공공주치의 제도도입으로 1차 의료 강화. 포괄적 공영의료서비스 도입. 일차의료센터-병원-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포괄적 지역공공병원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대폭 확충]

- '의료인력인권법' 제정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7명으로 제한 법제화
- 의료현장 주 4일제 도입
- 현행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른 보건업 근로·휴게시간 특례 업종 폐지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입원치료 시 본인부담 면제
- 자궁경부암백신 급여화, 임신중지약물과 시술 급여화 등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여성의료 접근권 확대
- 공적 정신건강 지원시스템 구축(학교나 지자체 상담지원 체계 확대)
- 소득 없는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청소년 및 의료급여환자부터 무상의료실시
- 연간 의료비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5.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기후정의·생태사회 실현

(1) 현황

① 기후위기/핵발전 위기

[화석/핵 연료 중심의 발전 구조의 문제점]

-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구조를 갖고 있음. 서해안 석탄화력 발전단지와 4개의 핵발전소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중심으로 현재의 전력망이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지역별로 여전히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중.
-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 국가로 핵발전소 사고 및 핵폐기물의 위험성이 매우 큼.

[한심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권고에 따라 한국은 2010년 대비 2030년 최소 45% 이상 탄소배출을 감축했을 때에만 2050년 탄소중립 가능(한국정부 기준연도 2018년 대비 49.6% 이상).
-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까지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밝힘. 그러나 이 수치는 언제 상용화될지도 알 수 없는 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 국외감축분을 과장해 허구로 날조된 것.

[기업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부활한 녹색성장]

- 정부의 실제 기후정책은 재벌지원으로 점철된'한국형 그린뉴딜'과 삼성·SK·포스코 등 민자 화력 발전 신규건설이 드러내듯, 세금을 통한 기업지원과'녹색자본'양성
- 관련 법규로,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으나 해당법안은'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등 기업의 더 많은 이윤추적에 그 목적이 있음.

② 에너지 이용의 불평등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기업 에너지 사용 부담의 대중전가]

- 많은 기존 건축물들이 부실한 단열, 통유리 등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구조
- 전기보조금 등으로 기업은 에너지 사용 부담을 대중에게 전가

③ 주민건강권을 해치는 폐기물

[기업의 이윤놀음에 맡겨진 폐기물]

- 폐기물 처리는 대부분 자본에 맡겨지며, 폐기물처리업 평균영업 이익률은 14.4%에 달하며, 특히 매립장 보유업체 평균영업 이익률은 30%, 소각시설 보유업체 평균영업 이익률은 16%에 달해 폐기물 처리 자체가 자본의 이윤 원천이 되고 있음.
- 이는 주민 반대를 짓밟고 후속 조치도 없이 폐기물 처리장을 지으려는 근본 동인임.

④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농축산업

[기후·생태위기 가속하는 공장식 축산과 관행농업]

- 축산업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5%를 차지하며, 공장식 축산은 육류소비를 부추겨 기후위기를 가속함.
- 메탄·아산화질소(N₂O) 등 온실가스 다배출 관행농업 전환 필요
-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한 관행농업 역시 농민과 시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있음. 유전자조작 식품의 수입과 유통도 문제가 됨.

(2) 정책

[녹색성장기본법 폐지와 기후정의기본법 제정]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법제화
- 재벌과 에너지기업만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노동자·농민·여성·청년 등이 주도하는 기후정의위원회 또는 기후정의국민의회로 대체
- 산업별 생산 및 탄소배출 감축 의무 부여
- 기후예산 편성 및 집행권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

- 203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가동 중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 노후 핵발전소는 수명 연장 없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설계수명이 남아 있는 핵발전소는 2035년까지 가동 중단
- 지역기반 공사와 협동조합 중심 재생에너지로 대체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노동자 및 지역공동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동체의 회복과 역량확대를 도모

[전력산업 통합공기업 설립]

- 6개 발전회사 수평적 재통합과 민영발전소 공영화
- 통합공기업 산하 지역공영 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
- 발전공기업 운영구조 민주화, 지역사회·노조의 전력생산-전달-소비과정 참여권 명문화
- 에너지 재벌을 위한 가스직도입 폐지

- 석탄화력·핵발전 조기폐쇄와 공영 LNG 발전으로 백업전원 확보
- 에너지전환과정에서 모든 노동자 고용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에너지 사용 효율화]

- 신축, 증개축 공공건물 재생에너지 의무기준 도입
- 신규주택 에너지 효율화 기준 도입, 패시브 하우스 국가보조
-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혜택 폐지
- 도시에너지 효율화 종합프로그램 도입
- 건축물 개량사업 확대, 건축물 에너지 등급제 도입

[생산과정 탄소배출 강제감축]

- 현행 197개로 제한된 기업 탄소배출감축의무 전면 확대, 탄소배출권거래제 폐지로 탄소배출 감축 강제
- 에너지 생산·전달·소비과정 사회적 통제 법제화, 5년간 7조 원에 달하는 에너지 다소비기업 전기요금혜택 폐지

[공공교통 이용률과 생태친화 교통수단 확대 및 안전운임제 적용 및 확대]

- 공공교통수단 이용률 확대는 탄소감축을 위해 필수적. 이를 위해 잘 짜인 통합대중교통체제가 필요. 2020년 룩셈부르크가 시행한 대중교통 전면무상화 역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였음. 대중교통 이용률 확대에 근거한 도보와 자전거 등 마이크로모빌리티 접근권 확대 역시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 바르셀로나 슈퍼블록 등이 그 사례.
- 통합교통체제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확대
- 자전거 도로와 생태친화 교통수단 보급망 확대 구축
- 전체 운송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적용 및 확대

[기업의 산업폐기물 배출 규제 및 폐기물 처리 공영제 도입]

- 기업의 산업폐기물 배출 규제
- 폐기물 운송·수집 및 처리업무 전면 공영제 도입

[공장식 축산 중단과 농업의 생태적 전환]

- 밀집사육·감금틀 사육 폐지를 통한 공장식 축산 중단
- 관행농업의 생태유기농업 전환과 이를 위한 정부 지원
- 공공기관부터 식단선택권 확대 추진을 통한 채식식단 선택권 확대

6.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실현

(1) 현황

[전쟁위기의 한반도/동북아]

- 한반도 정전체제는 미중 패권경쟁과 북미 대결, 남북대결이 교차하는 매개고리가 되어 한반도에 핵전쟁 가능성을 포함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그리고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군비경쟁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역임. 특히 우리는 한반도의 핵전쟁의 위험성은 북핵문제만이 아니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과 한미의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 역시 핵전쟁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임을 주목해야 함.
- 즉 한반도는 남북 대립, 북미대립, 미중간 경쟁이 중첩되는 지역이자, 일본이 '전쟁가능한 국가'를 추구하면서 가장 먼저 군사적 개입을 할 지역.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과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 반대-평화체제를 이뤄내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

(2) 정책

[한반도-동북아의 평등하고 호혜로운 평화협력체제]

-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전쟁 금지(동북아 부전조약)
- 한미군사훈련 등 동북아 지역의 합동 군사훈련 중단
- 한미일 동맹에서 평화-호혜-평등의 한미, 한일관계로 전환로의 전환(한미일군사동맹 추진 등 모든 군사동맹 반대)
- 모든 외국군의 자국으로의 철수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정착]

-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

- 남북한의 획기적 상호 군축

[한반도-동북아 비핵지대화]

- 한국의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 한반도-동북아 비핵지대화 : 비핵국가는 핵무장을 포기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은 동북아 비핵국가에게 핵공격을 하지 않는 것과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북아비핵지대화 조약 추진

7. 마무리

생명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윤 중심의 사회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명과 안전 중심의 사회’로 바꿔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치관과 법제도, 시스템, 관행을 같이 바뀌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생명안전 영역이 몇 개 영역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시적으로는 미중패권경쟁이라는 세계정세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노동자가 일하는 노동환경이 해당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노동, 의료, 교통, 산업, 에너지, 무기, 먹을거리 등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생명과 안전문제는 걸쳐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미 ‘위험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재난과 참사를 막는 일에, 일어난 재난과 참사를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근본적으로 위험사회를 극복하는 길에 이백운공투본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사회를 끝내고 생명안전사회를 이루는 것은 한국사회의 체제(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토론회에 모이신 분들이 한국사회의 체제전환에 길에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
시민사회 의제에 대한 각 정당의 해결방안 및 공약

.....
민중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
'노동 중심 사회로 대전환'을
.....
실현하자!
.....

송명숙
진보당 공동대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들 합니다. 대선이 코앞인데 유력 대권주자 그 누구도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언론보도를 보면 답답해집니다. 이 중요한 대선 정국에 나오는 말들 이래봤자 대부분 기득권 양당끼리의 정쟁과 진영논리, 네거티브, 상호 조롱과 비방, 케케묵은 색깔론과 젠더갈등 등 시대착오적인 말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사회 최대 현안인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아볼 수 없고, 불평등 구조아래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 속에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주최 측과 시민사회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들어 주신 이 자리가 계기가 되어 대선 판에 큰 울림으로 퍼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보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하는 민생 현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출해 주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에 죽어도 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각지대 투성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이 되어서야 적용받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차별받는 대목입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위험(죽음)의 외주화' 또한 여전합니다.

진보당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고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겠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비용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산재의 핵심 요소를 예방하겠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을 개정하여 폭염, 한파 시 작업중지권 부여하고, 재해발생 사업장은 도급 금지 및 직접 고용 강제하겠습니다.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살인 처벌법'으로 개정하여,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무너지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산업안전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법'을 만들어 더 이상 죽음을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막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체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사업'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분야까지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공무원 법제화 및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민간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위하여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법제화' 및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의무화', 비정규직을 사용 비율에 따른 '법인세 부담 강화'로 비정규직 사용 시 기업이 망한다할 정도로 과세하는 방안 추진하겠습니다.

'전국민노동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의 낡은 노동법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을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동3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저해하는 플랫폼종사자법은 폐기하겠습니다. '공동사용자책임'을 도입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개념을 바꿔 계약의 유무와 형식을 묻지 않고 사업의 필수 부분을 운영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노동을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며 타인의 노동의 내용과 방식,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자는 모두 '사용자'로 보게 하고,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오는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공공병의원 확대’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은 우리에게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의료대응역량 강화의 핵심은 ‘의료인력 확충’입니다. 공공병원 정원확충, 보조인력 확충지원 등 적극적인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90%까지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치의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민간의료보험 규제’를 통해 불필요한 국민 의료비 상승 방지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고,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가 없도록 ‘응급의료 체계 개선’하고,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 및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 도모하겠습니다. 진보당은 ‘돈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돌봄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의 큰 근심거리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돌봄’문제입니다. 돌봄은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돌봄은 멈출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노동입니다.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안전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 보다 평등한 세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진보당은 무엇보다 ‘110만 돌봄노동자 국가 직접고용’으로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고, 돌봄노동이 민간에 위탁된 채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고착되고, 여성이 전담하는 단순 노동, 값싼 노동 취급받는 현실을 타파하여 누구나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진보당은 ‘돌봄정책기본법’과 ‘돌봄노동자기본법’입법청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돌봄정책기본법’에는 ▲모든 사람이 생애주기 전반에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 ▲돌봄 국가 책임 명시, 공공성 실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규정 ▲국공립 돌봄제공기관 확충 및 직접 운영 ▲노동시간 단축 포함 돌봄 휴가 보장 ▲가정 내 돌봄 책임 분담 및 돌봄 차별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돌봄노동자기본법’에는 ▲돌봄노동자 근로자성 인정 및 기간제 금지 ▲돌봄임금을 최저임금 130%로 규정 ▲유급휴가, 퇴직급여, 방문돌봄노동자의 최소근로시간 보장, 야간근로 제한, 휴게 보장 ▲노정교섭 제도화, 업무상 재해로 근골격계 질환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돌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상병수당을 유급병가+소득70%’로 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화물운송 택배, 배

달 등 ‘운송업 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적용 및 확대’하며,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법과 제도를 개선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삭감없는 주4일제’와 같이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고용책임제’를 실시하여 일하고 싶은 누구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오랜기간 재벌기업 중심의 노동약탈 사회였습니다. 재벌이 커질수록 양극화와 불평등이 커지는 구조 속에 노동자 민중들의 삶과 생명이 위협받아야 했습니다. 진보당은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노동중심 사회로 대전환’을 실현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길이라 확신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참사 피해자의 목소리

.....

.....

.....

.....

.....
참사 피해자의 목소리

가습기살균제 참사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 2016년 국감에서도 정확한 조사와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내지 못하여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대형 시민재해 참사로서, 국민의 생명안전 부분에서 책임을 지지 못한 국가적 망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후보님들께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시민과 공동체와의 약속을 지키며, 근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국가적 책임으로부터 기인하는 생명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요약

1994년부터 43개 업체에서 제조 및 판매되어 2011년까지 17년간 총 998만 개가 판매되었고 2014년 4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피해신청자는 7,642명이며, 이중 사망자가 23%로 1,740명입니다. 또한, 43개 제조 업체, 28개 판매 업체, 31개 제품으로 판매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질병은 노출의 양과 기간, 독성 성분과 피해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4,274명 (사망1,040명)만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3,368명(사망 700명)은 피해자로 인정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청한 피해신고자의 수를 판매량에 비교해 보면 정말 턱없이 적은 수가 아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엄청난 피해가 나타난 참사를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고 가해 기업에만 책임을 물어 해결하려 하는 것은 국가는 책임지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황은 2013년 2월

법원이 형사사건 기소를 중지하였고, 2014년 3월 초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지원 기준을 고시했던 환경부가 2일 만에 기존결정을 번복하자 법원은 2014년 8월 과장 광고에 대한 판결을 과징금 부과 처분에 그치게 판결하였고, 그 사이 수많은 피해자들은 건강악화가 극심해지고, 사망자가 속출했으며, 각종 피해자 활동과 거센 항의반발 시위를 하였습니다. 2016년 4월 제조 판매사 소환을 시작으로 1,2,3차 구속과 검찰소환조사를 하고, 2017년 가해기업에 징역 7년, 금고 4년형 처벌이 되었으나,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위를 진행했음에도 원료 물질이 모두 들어 있는 제품을 판매한 특정 대형기업과 정부 부처의 관계자 간 결탁으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정황도 의심되었고, 무죄 판결로 1심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참사는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공식 사과와 국가책임에 대해 진상규명과 해결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람 앞의 촛불만큼 힘없이 꺼졌으며, 만 4년이 지나 가습기살균제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1년째가 된 2022년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아직도 퇴색되어 삭아 내리고, 이미 보이지 않아 잊혀져 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차마 마음 아파 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변한 참혹한 온몸을 열어 보여줘야 하는 처절한 현실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왜 해결이 되지 않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습기살균제참사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참사를 이해하고 판단하며,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 여러 과정상의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참사와 피해자에 대한 인식부터 오류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이나 환경 유해 물질에 의한 불가항력적 참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제조 판매한 제품을 피해자에게 속여서 판매한 불법행위에 의한 참사이며, 이러한 제품을 판매허가 한 정부 기관도 분명 가해 책임이 있는 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두 가해자 모두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해결입니다.

그런데, 정부관계부처와 가해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를 마치 피해구제를 해줘야 하는 재난 참사 피해자인 듯 인식오류의 프레임을 씌워 서로 간 책임전가로 시간을 끌며, 가해 기업이 피해자를 위해 대단히 많은 보상을 하고 있고, 선행을 하고 있으며, 정부부처도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듯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죄의 무게를 줄이고자 하는 데에는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의 25%가 2011년 당시 영유아였던 현재 초,중,고 학생이며, 그아이들 중 80%가 사망하였는데, 참사 초기 영유아를 키우던 사망한 산모와 체력이 약한 노인 사망피해자까지만 1~2단계로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거 공간에서 같은 시기 같이 노출된 가족 내에도 피해가 인정된 피해자와 불인정 노출 확인자가 공존하여, 이것으로 가정불화와 가정 파탄지경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또, 현재 시춘기 청소년이 된 아이들에게 일반적인 또래 아이들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불안한 가정과 불편한 건강, 체력과 10년 이상 이어지는 가족의 의료비로 인하여 늘 부족한 가계경제는 이 아이들에게 기회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조차 없게 만듭니다.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깊은 슬픔에 넘치도록 젖어서 더 이상 항의에 대한 의욕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끊임없이 들려오는 함께 동병상련하고 의지하던 피해자분들의 약화나 부고소식이 늦춰지기만을 바랍니다.

두 번째, 가슴기살균제 참사는 조사 및 판정과정의 문제 때문에 이토록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기살균제에 노출 평가와 상관관계, 개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출조사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은 귀납적 논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의학적 피해와 인과관계에 대한 신체적 진단 평가는 다분히 후향적이며, 치료에 중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향적인 연구에 기초하나 노출 평가와 개별 인과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 적절한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치료와 법적 책임이 별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판정위원회와 피해구제위원회와 각종 위원회가 별개로 피해자가 각 지정 병원별로 만나는 의료진은 행정 절차상의 사무적인 위원 중 한 명으로, 서류와 실제 피해자와 각종 위원회와 한국환경 산업기술원의 연구원은 분야와 역할이 달라서 서류를 통해 일면만을 보기 때문에 한 가족 내에서도 판정이 다르고, 지원도 다르고, 심지어 행정처리가 몇 년씩 누락되기도 합니다.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의료진의 판단 상 개연성이 충분하여 피해인정과 건강피해 등급에 대한 소견이 위원회에 회부 된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의료진이 아닌 법조계나 과학계, 정부 부처 위원의 의견에 의해 심의 의결이 불인정 판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체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소명할 단 1분의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슴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이 늦어지는 큰 이유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무책임함입니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안을 하면 사전 고지 없이 행정규칙을 행정 편의적으로 변경하고, 답

변이나 공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질문을 해도 확인하겠다는 답변 외에 실제 응답은 해주지 않습니다.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는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입증 증빙자료로서, 영양급여내역을 제출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 내역서는 발급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내역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년 이전에 가슴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며,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뒤늦게 신청을 한 피해자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영양급여내역을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출을 할 수가 없는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진료 부분에 관한 내역은 10년 이상이라도 전송받아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영양급여내역서에는 급여내역 즉 보험료 내역이 기록되어 나오며, 금액 증빙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피해자에게는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이 영양급여내역서가 없으면 영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간병비처럼 증빙하기 까다로운 부분은 청구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지급 시점이면 피해자는 언제나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가슴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이번 대통령선거가 미해결상태로 이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적 참사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재난과 참사에 맞서 이겨내고 서로 돕고, 스스로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외면과 대기업의 과렴치함으로 지난 10년을 굽아온 가슴기살균제 참사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해 기업 전체와 국가적 차원의 참사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고찰이 필요하며, 새 정부에서는 피해자로 구성된 실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한 기구의 설치가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
참사 피해자의 목소리

.....
조작되고 은폐된
.....
경동건설 故 정순규 사망사건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후보님. 아직 많은 국민들이 모르시지만, 2019년 문현동 ‘경동건설’ 리
인아파트에서 산재사망으로 돌아가신 故 정순규님의 아들 정석채라고 합니다. (010-8300-
0289) 아버지를 처참하게 잃은 지 2년 2개월 18일(811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발견됐을 때 의식이 없었고, 심장이 뛰지 않았고, 뇌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렵
게 확보한 119 신고 녹취록을 보면 119상황실은 경동건설 신고자에게 “몇 미터에서 추락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목격자와 CCTV 모든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동건설 측은 이미 짜 놓은 듯
“1M에서 추락했다”고 대답합니다. 모든 게 충격적이고 무지했었던 저희 유족은 경동건설 가해자
들의 답변을 녹취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초 신고자가 조사대상이니 경동건설이 개입했을 거
라 아둔하게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저희 아버지를 벽에서 끄집어냈다고 말했
으나 현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유족들은 비계 안전조치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사고 전후 증거들을 모았고, 안전난간대도 설치하지 않고, 비계와 옹벽 사이가 45cm 떨어져 있어
사람 한 명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현장인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틀 뒤 경동건
설은 비계를 옹벽에 바짝 붙이고, “경동건설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이 3곳이라고 주장하던
수직사다리도 철거했으며 모두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안전이 완벽한 현장으로 모조리 바꿨습니
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국민청원’ 링크를 여러 커뮤니티에 올리면 댓글창에 “경동건설 하청 대표와 이사가 빈소에 방문했을 때 유족이 조폭들을 동원해 감금, 폭행, 협박했다더라~ 피떡이 되도록 맞고 왔다더라~” 이렇게 경동건설은 댓글 작업을 했었고, 2020년 국정감사 이후엔 언론사들 댓글창에 “故 정순규는 술 마시고 작업하다 실족한 것”이고 “경동건설은 안전한 현장”이라며 댓글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경동건설은 여러 언론사들에게 하루에 3~4번씩 전화해 “故 정순규는 술 먹고 죽은 거”라며 기사를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경동건설이 행한 악행들을 나열하자면 오늘 하루라도 부족합니다.

1심 선고 전 반성 없는 경동건설 가해자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 따르면 “故 정순규 아들이 여기저기 알리고 다녀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며 반성문 같지도 않은 망언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16일 경동건설 가해자들의 1심 선고는 참담했습니다. 사법부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어찌면 1심 판결은 예정되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목격자가 없다면 고인이 실수로 추락했다는 걸 판사가 어찌 알았을까 싶었습니다.

최후변론에서 경동건설 측은 “안전관리를 위반했다라도 정씨의 죽음엔 본인 책임이 크다”며 패륜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안전조치, 비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경동건설은 교묘하게, “故 정순규가 중간사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직사다리를 왜 사용했는지 모르겠다”며 고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정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지정서’와 같이 경동건설과 하청 제이엠건설에서 故정순규 고인의 필적과 서명을 위조했어도 결국 집행유예에 그치는 게 현재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경동건설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면 부산 사법부는 “사문서위조 신문”은 왜 적극적으로 했는지 정말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유족이 발 벗고 나서서! 고인에게 책임전가하기 위한 위조서류를 전문기관에 맡겨 위조임을 사법부에 알리고 제출해 드려도 부산 사법부는 결국 경동건설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지키기에 바쁩니다.

민중의소리 기사내용 중 (대필로 서명 할 경우 서명란에 그냥 이름 석 자를 쓰거나, 성(姓)만 쓰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게 정상입니다. 관리감독자지정서 문서에서 고인의 서명까지 똑같이 흉내 내려고 서류를 작성했다는 건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매우 악의적입니다. 건설업계 수많은 전문가들은 “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쓰는 경우는 드물고, 故정순규 피해자 사례는 경동건설이 산재사망사고 책임을 재해로 숨긴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입

을 모읍니다. 함경식 건설안전기술사는 “25년 건설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서류를 써서 원청 관리 감독자의 의무를 하청 작업반장에게 전가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봤다”라며 “정황상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분과위원장 또한 “작업반장은 직접 건설현장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하며, 만약 사후에 다른 사람이 서명한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하청 작업반장이었던故 정순규 피해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강한수 위원장은 “이건 책임 떠넘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황당하고 악랄해 보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산재사망 유가족들이 뼈저리게 아는 건 ‘과실치사’란 말조차 모순덩어리라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과실들이 너무나도 축적되고 수많은 잘못이 모여서 일어난 사건입니다.故 정순규의 죽음은 경동건설의 기업살인으로 희생된 사건입니다. “위험한 거 뻔히 알면서 설마 죽겠어?”라는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살인자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과실치사’는 의도적 살인입니다!

‘제2의故 정순규’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경동건설은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것인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지금도 경동건설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지키지 않은 채 보란 듯이 여기저기서 신축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6개월 전 해운대 공사현장에서선 비계는 말할 것도 없으며 수평 낙하물방지망조차 없이 지나다니는 시민들과 버스를 비롯한 차량들이 위협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참사가 일어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경동건설’의 악행은 멈출 줄을 모르는 걸까요? 도대체 얼마나 법 위에 군림하는 범죄집단이기에 이러는 것일까요? 불과 사흘 전에도 해운대 경동리인뷰 신축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이 터지며 콘트리트가 쏟아져 시민 한 분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데도 정녕 기업의 의도적 살인이 아닙니까?

후보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故 정순규 아버지는 은폐되고 조작된 기업살인의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죽음에 우위와 열위는 결코 있어선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유가족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한국전력도 66일 만에 거짓이더라도 사죄를 하고, 현대산업개발은 거짓이더라도 반성하며 대표가 사퇴한다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지 않는다면 외면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저희 유가족은 대책위도 없지만 3심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악랄한 경동건설과 싸울 것입니다.

항소심(2심)을 앞두고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재수사! 재조사! 부디 제발 하게 해주세요! 최초 발견자를 거짓말탐지기라도 동원해서 재수사 해주시고, 경동건설 측의 산업재해조사표만으로 조사를 끝낸 노동부 모든 책임자들을 재수사 해주시길 간곡히 빕니다. 아버지 시신이 너무나도 처참하였기에 어머니가 부검만은 극구 반대해서 부검을 못했지만, 아버지 시신검시 사진들을 국과수 법의학자들에게 의뢰해서 재수사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심(항소심)에서는 구형도! 판결도! 경동건설에게 제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경동건설의 악행들과 증거들을 유족들이 얼마나 더 찾아서 제출해야 할까요? 유족들이 더 이상 무얼 하면 되겠습니까…?

“일하다 죽지 않게” 국민으로서 정말 소박한 권리입니다. 소박한 권리조차 지켜지지 못한 채 지금도 전국 어디선가 산재사망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후보님 앞으로 얼마나 더 죽어야만 할까요? 제발 그만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동건설이 기업살인한 故 정순규 저희 아버지 사건을 기억해주시고, 신속한 재수사, 재조사를 통해 경동건설을 엄벌하여 주시길 故 정순규 유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간절히 빕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구지하철참사의 본질과 풀어야 할 과제

.....

지하철참사로 가족 잃은 유족들이 희생자를 불법암매장한 범죄자로 매도당하고 있다. “가만 있으라”는 선장의 말을 들은 세월호 승객들이 목숨을 잃은 것처럼 “희생자를 팔공산에 모셔라”는 시장의 말을 들은 유족들은 바로 그 시장에 의해 범죄자로 고발당해 10년 넘게 고통당하고 있다.

추모공원 형태는 있으나 이름이 없고, 위령탑은 우뚝하나 위령탑이라 부를 수 없으며, 희생자 묘역은 10년 세월을 건디고 있으나 이장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대구시장의 말은 곧 대구시정(市政)이요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는 시정(施政)이라 믿었기에 그것이 이면합의든, 수목장이든 약속의 이행일 뿐, 불법이 아니라 생각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짓을 가르치지 않듯, 시장이 시민에게 불법을 권할 리 없지 않은가?

그런데 3년여 재판 끝에 사법부는 유족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정작 대구시는 여전히 자신들의 언약을 부정하며 유족들에게 덮어씌운 범죄자 굴레를 벗어 주려 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요구

1. 대구시는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약속한 추모사업(수목장 등)을 하루빨리 실행하라
2. 대구시는 시민과 상가변영회, 영령과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하라

1. 대구지하철참사 개요

1) 참사의 발생

대구지하철참사는 2003년 2월 18일 발생했다. 대곡역에서 안심역으로 가던 1079호 전동차가 오전 9시 53분경 중앙로역에 도착하였을 때 50대 승객이 휘발유에 불을 붙여 차바닥에 던졌고 이 불은 순식간에 전동차 벽면을 타고 번졌다. 승객들은 열린 문을 통해 대부분 밖으로 탈출하였으나, 불길은 한 명의 기관사가 진압하기엔 너무 거셌고 몇 분 뒤 반대편에서 진입한 1080호 전동차로 옮겨 붙었다.

2) 피해 규모

양쪽 기관사와 대구지역 거의 모든 소방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길은 맹렬히 타올라 1079, 1080호 전동차 각6량씩 12량 모두를 빼대만 남기고 더 이상 탈 것이 남아 있지 않을 순간에서야 겨우 잡혔다. 이로 인해 승객, 철도 노동자, 청소하는 아주머니 등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와 수백억의 재산상 손실이 있었다.

2. 대구지하철참사의 주요 원인

1) 불쏘시개 전동차를 허용한 잘못된 법과 제도

- ① “지하철(전동차)는 불에 타지 않는다”는 믿음 혹은 당연함
- ② “대한민국 전동차는 불에 타도 된다”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제작 업체

사망자와 부상자의 피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는 전동차가 불에 탈 때 내뿜은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세계 각국의 전동차 제작에 관한 기준은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 불에 타지 않을 것(불연재(不燃材))

둘째, 불에 잘 타지 않으면 됨(난연재(難燃材))

우리나라는 두 번째를 택하고 있었다.

당시 국내 업체들은 불타지 않는 전동차를 만들어 해외에 비싼 값에 수출하고 있었으나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굳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했기에 국민들은 불쏘시개 전동차를 타고 다니

다 참사를 겪게 된 것이다.

2) 생명보다 돈을 밝히는 지자체장과 지하철공사 경영진

- ① 최소의 안전 기준은 최대의 위험 초대장
- ② 화재에 대비한 내용 자체가 없는 안전 매뉴얼
- ③ 부실한 안전 교육
- ④ 1인 승무제

지하철을 건설,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대다수의 자치단체장들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안전을 선택한 결과가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위험을 강요하였고, 화재에 대한 안전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었고 법정교육훈련마저도 소위 “전과교육”이란 눈속임으로 건너 뛰었다. 이러한 경영마인드가 1인승무제로 녹아들어 그것이 대구지하철참사로 나타난 것이다.

3. 희생자가 남겨진 우리에게 바라는 것

1) 희생자대책위 4대 과제

참사 수습이 한창이던 2003년 3월부터 유족들은 4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4대 과제

- 1. 희생자 문제의 완벽한 해결
- 2.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 3. 철저한 원인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
- 4.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추모사업 추진

당시 국무총리(고건)와 유족대표(희생자대책위원장)의 면담에서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약속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참사의 법적 가해자요 수습의 행정책임자인 대구시와 피해자단체(희생자대책위)의 추모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2003년 3월 31일), 이 후 대구시와 유족단체간 지속된 회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모공원 조성, 희생자 묘역, 위령탑 건립, 재단설립 등이 진행되게 되어 있었다.

2) 앞으로의 과제 - 추모사업의 제자리찾기

대구시는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추모공원임을, 안전상징조형물이 추모탑임을 대구시 스스로가 공표하도록 하고 특정인과 대구시의 그릇된 마음으로 자격없는 자들의 놀이터가 된 218안전문화재단을 참된 추모재단으로 돌려 놓은 것이 유족(단체)의 남은 일 중 하나다.

2022.1.17.

안전의 성지! 생명의 도시!! 새로운 대구 건설!!!

대구지하철참사회생자대책위원회

참사 피해자의 목소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개요

- 한국회사 폴라리스 쉬핑이 '유조선→철광석운반선'으로 개조하여 운항
- 2017년 3월 31일, 브라질 출항 5일 만에 남대서양에서 침몰
- 한국인 8명 포함 총 22명선원 실종
- 전 세계 개조화물선 52척 중 첫 침몰



▲ 스텔라데이지호(선박 길이 322m 초대형 화물선)
▶ 침몰 1년 전 스텔라데이지호 내부 모습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당시
'2번 좌현 쪽이 침수 중'
이라고 보고된 곳의 사진
→ 육안으로 심각한 부식 확인 가능

©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2017년 3월 31일, 한국인 8명 포함 총 22명의 선원이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와 함께 실종됐다(승선 선원 총 24명 중 필리핀인 2명 생존).

스텔라데이지호는 1993년 유조선으로 만들어져 15년간 운항했으나, 국제해사기구(IMO)의 단

일선체 유조선 퇴출 정책으로 폐선하려던 선박이었다.¹⁾ 선체 외관을 한 겹으로 만든 단일선체 (Single Hull) 유조선은 사고가 날 때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가 심각해졌다. 2000년 대 들어 세계 각국은 단일선체(Single Hull) 유조선을 퇴출하고 선체 외관이 두 겹인 이중선체 (Double Hull) 유조선으로 바뀌나갔다. 이때 이명박 정부는 한국의 선박회사들(폴라리스 쉬핑, 장금상선, 시도상선)이 쓸모없어진 단일선체(Single Hull) 유조선을 싼값에 사들여 개조해서 화물선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었고, 그 결과 30척의 유조선이 중국 조선소에서 화물선으로 개조되었다.

한국의 선박회사들은 폐선해야 할 단일선체 유조선 30척을 고철 값에 사서 중국에서 화물선으로 개조했다. 이중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 쉬핑은 19척을 소유했다. 세계적인 해양강국 이라고 자처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선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 확대 만을 염두에 둔 개조 화물선이 운항하도록 승인해주었다.

폴라리스 쉬핑은 개조 당시 선체의 모든 강판과 중요 부품을 교체했다고 밝혔지만, 스텔라데이지 호는 개조 후 8년 만에 남대서양 바닷속으로 침몰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로 26만 톤의 철광석 도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폴라리스 쉬핑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보험금으로 446억 원을 받아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

폴라리스 쉬핑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 12시간이 지나서 해경에 신고했고, 가족들에게는 침몰 이후 16시간이 지나서 연락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 공무원은 일주일도 지나도록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침몰 참사 초기에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수색에 관한 어떠한 설명이나 지원도 받지 못했다.

■ 현재 상황

- 2019년 2월,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실시 - 침몰원인 규명 실패, 유해를 발견했으나 수습하지 않고 종료
- 2019년 7월,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 공청회
- 2020년 9월,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추진을 위한 국회 공청회
- 202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결정문 송부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규명과 실종선원 유해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 실시 필요

1) 선체 외관을 한 겹으로 만든 단일선체(Single Hull) 유조선은 사고가 날 때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가 심각해졌다. 200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은 단일선체(Single Hull) 유조선을 퇴출하고 선체 외관이 두 겹인 이중선체 (Double Hull) 유조선으로 바뀌나갔다. 이때 이명박 정부는 한국의 선박회사들(폴라리스 쉬핑, 장금상선, 시도상선)이 쓸모없어진 단일선체(Single Hull) 유조선을 싼값에 사들여 개조해서 화물선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었고, 그 결과 30척의 유조선이 중국 조선소에서 화물선으로 개조되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들과 시민사회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를 꾸려 침몰원인을 밝히고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침몰 2년 만에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심해수색을 실시해 침몰 선체를 찾았으나 많은 시행착오로 침몰원인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 더구나 심해수색 중 발견한 유해를 수습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2차 심해수색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 1차 심해수색으로 침몰 선박 발견



▲ 1차 심해수색 중 선원 유해 발견 → 미수습

1차 심해수색 이후 국회는 두 번의 공청회를 개최했고,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으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침몰원인 규명이 가능하며 국제 심해수색 기술 경험의 축적과 이전을 통해 국내 심해 과학·수색·조사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원인 규명과 실종자 유해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수색의 실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재난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에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은 3년 연속 전액 삭감되었다.

■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제10차 예결위]

- 원칙적으로 민간 선사(폴라리스 쉬핑)의 책임임
- 1차 심해수색 예비비(53억원)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 조치였음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경찰 등이 아닌, 민간 회사에 근무하던 국민의 문제에 추가로 예산 투입을 하면 향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음

침몰 참사 5년, 그러나 침몰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시작도 못했다.

- 2019년 4월, 마셜제도는 선박의 등록국으로서 특별조사보고서 발표(IMO 보고용)
 - * 스텔라데이지호는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으로 마셜제도에 등록된 선박
- 2020년 2월,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부는 심판부에 심판청구
 - 심판청구한 지 2년 되어가도록 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음
- 2022년 1월 현재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보고서 발표 예정일은 미정
- 2022년 1월 현재까지 검찰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의 책임자를 기소하지 않았음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는 5년이 다 되도록 침몰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정부가 침몰원인을 밝히지 않으니, 검찰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에 대해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폴라리스 쉬핑은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정상 영업 중이다. 침몰원인 조사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7년에 시뮬레이션 용역을 의뢰해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차 심해수색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체의 잔해를 확인한 후 다시 시뮬레이션 용역을 의뢰해야만 했다. 2017년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로는 실제 침몰 선체 잔해의 분포를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2022년 1월 현재에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특별조사보고서 발표일자를 확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의 주장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대의견 16번에는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기되었다.

【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_부대의견 16번 】

(16) 정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수색과 관련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보고서 발표 등 진전사항을 바탕으로 추후 2차 심해수색에 필요한 예산을 지체없이 지원한다.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2차 심해수색 실시
- 국무총리실 내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추진 기술TF' 설치
- '조건 없는' 예산 편성

침몰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조타실에 있는 유해수습을 위해서는 기술TF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1차 심해수색의 실패 원인은 기술TF의 부재)

기술TF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외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국내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술TF의 사전 준비와 함께 '조건 없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앙해심원의 특별조사보고서가 발표된 후 2차 심해수색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예비비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별조사보고서 발표일은 미정이다. 중앙해심원은 세월호 특별조사보고서도 8년이 되어가도록 발표하지 않고 있다. '중앙해심원의 특별조사보고서 발표 등 진전사항을 바탕으로 2차 심해수색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부대의견은 시간끌기용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각 시민사회단체 제안 생명안전 의제

.....

.....

.....

.....

.....

각 시민단체 제안 생명안전 의제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20대 대통령 후보와 여야 정당에게 요구합니다

1.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십시오
2.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임무 완수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십시오.
3. 국정원과 군 수집정보, 대통령기록물 등 국가가 보유한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정부 차원의 검증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4.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자 범위, 참사 관련 자료 관리 등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십시오.
5. 중대 재난·참사와 중대 인권침해에 관해 공권력의 임무 방기와 남용을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십시오

세월호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여 살 수도 있었던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사건임. 이 참사의 수습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권리가 크게 훼손되고 상처

가 깊어졌음. 더욱이 참사 이후 진실을 밝히고자 나선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에게 총체적인 국가 폭력이 자행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음. 진실을 은폐하고 피해자와 시민들을 핍박하기 위해 공권력이 남용되었음. 그 결과 참사 8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참사의 진상과 그 후의 국가폭력의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로 여전히 '조사 중'인 상태에 있음. 진실에 다가서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성역 역시 아직 견고함.

1. 세월호참사와 그 후의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할 것을 약속하십시오.

〈세부 요구사항〉

-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설명〉

- 세월호 침몰과 참사의 진상이 아직 모두 밝혀지지 않는다고, 참사 당일 컨트롤 타워의 활동 등에 관한 정보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음.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제한적인 조사와 수사, 법원의 판결로도 참사의 발생, 구조구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피해자 권리침해와 국가폭력에 관해서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음.

따라서 세월호참사와 그 후의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국가수반인 대통령이 분명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함으로써, 이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국가의 책무와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수적임.

특히 공개 사과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에서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한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완수를 피해자와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것이 필요함.

2.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임무 완수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십시오.

〈세부 요구사항〉

●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개정

- 최종보고서 완성까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기 보장
- 정보공개 미비, 조사거부 등 불가피한 조사 지체 요인 발생 시 추가 조사활동 기간 보장

〈설명〉

-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완수할 것을 약속했으나 입법 미비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최종보고서 작성 이전에 종료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최소한 최종보고서 완성까지 위원 임기가 보장되어야 위원회의 검토와 의결을 거친 책임있는 공식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음.
- 한편, 지난 2020년의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의 미공개, 국정원 및 군의 정보공개 과정의 지체와 검증의 어려움,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조사 비협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사 지체 요인이 발생했음. 이 경우, 객관적인 조사 지체 요인이 소명되는 조사 과제 혹은 수사 의뢰 과제에 한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함.

3. 국정원, 군, 경찰 수집정보, 대통령기록물 등 국가가 보유한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정부 차원의 검증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세부 요구사항〉

- 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 군, 경찰과 검찰, 기타 정부 기구의 수집 정보 전면 공개
- 정부 기구 수집 정보 공개 현황 및 위법 부당 행위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증 조사 실시
-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 결의

〈설명〉

- 문재인 정부 국정원과 군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정보공개를 약속했으나 국정원은 '세월호' 단일

키워드로 검색된 문건에 한해서만 목록을 작성하고, 이 목록의 공개를 거부하다가 여론의 압박을 받은 후 목록에 대한 사찰위의 열람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목록을 검토한 후 사찰위가 요구한 정보에 대해서도 내부 TF의 검토를 거쳐 비식별 처리하여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뒤늦게 정보 공개를 약속한 해군 역시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의 열람을 허용했으나, 표시된 데이터에 대한 사찰위의 검증은 거부하고 있음. 정보 경찰의 피해자 사찰 및 수집 정보도 온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이 요구됨.
- 한편, 국정원이 업무 범위를 넘어 세월호 피해자와 시민의 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불법으로 볼 수 없고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이루어졌음.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위’는 “국정원이 보수단체 활동에 관여한 정황은 법규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무범위 이탈로 판단되어, 다른 조사 사건과 함께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국정원이 이들을 징계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음.
- 정보 경찰의 피해자 사찰 및 정보수집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검찰 역시 세월호 관련 청와대의 수사 개입 등을 자체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
-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블랙리스트 감사 등 몇몇 ‘적폐 청산’ 감사에 적극 나섰으나 자신의 세월호 부실 감사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징계나 수사 의뢰도 진행하지 않았음.
- 따라서 이들 정부 기구의 수집정보의 공개 현황, 세월호참사 전후 위법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증작업이 필수적임.
- 더불어 부당하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세월호참사 관련 청와대-대통령 기록을 공개하기 위한 국회의 결의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됨.

4. 세월호참사피해지원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자 범위, 참사 관련 자료 관리 등에 관한 입법미비점을 개선하십시오.

〈세부 요구사항〉

-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 자원활동가 등에 관한 피해자 인정 범위와 치료 기간 확대 등
 -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이관에 관한 입법 미비점 개선

〈설명〉

-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여론에 떠밀려 진행된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일명 김관홍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범위에 민간잠수사가 포함된 것 외에는 피해자 범위, 치료 기간 등에서 제기되어온 대부분의 요구가 제외되었음. 이의 보완이 요구됨
- 또한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와 관련해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이후 이관하는 것으로 지원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사참위 조사 활동 기간 이후 4.16생명안전공원 건립(2024년 4월)까지 자료를 보관할 주체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함.

5. 중대재난참사와 중대인권침해에 관해 공권력의 임무방기와 남용을 엄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십시오.

〈세부 요구사항〉

- 공무원 처벌특례에 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한 형법 개정

〈설명〉

-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이 삭제되었음. 재난참사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참사 발생 시 구조구난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사법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보다 엄격한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려워졌음.
- 더불어, 세월호참사나 주요 국가폭력, 국정농단 사건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엄격히 적용되어 사실상 면죄부를 제공하는 반면, 정작 사찰 등을 당한 국민들의 침해된 권리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법적 처벌이 가해지지 않은 일이 빈발하고 있음.
- 따라서 재난참사의 예방과 피해자 권리 침해 예방, 그리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야 할 공권력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들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수적임.

.....

각 시민단체 제안 생명안전 의제

.....

(사)김용균재단

.....

20대 대선 요구

.....

(사)김용균재단

1.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 국민의 청원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논의·검토되는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되고 삭제되고 새로운 제약이 만들어졌다. 법이 적용되기도 전에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느냐는 우려와 한계가 제기되기도 했다.

- 그럼에도 ‘산재는 기업의 살인행위이며, 기업의 비용과 이익 우선 때문에 사회재난이 발생한다’는 사회적 동의를 담아낸 법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려내야 한다. 기업주, 경영책임자, 법인과 기관에 권한만큼의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재·재난참사를 막기로 우리 사회가 한 결정의 의미를 담아내야 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차별과 배제를 전제로 법을 만든 것이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목숨의 가치가 달라지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3년이 유예되면서 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위해 인원 쪼개기 사업장들도 생겨나고 있다.

- 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규정이 확대되어야 하고, 교육시설 자체에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제고되어야 한다.

- 경영책임자나 사업주, 법인들이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관련법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장 노동안전보건조치는 형식적 교육이나 처치가 핵심이 아니다. 노동시간, 노동환경, 일하는 구조, 노동자들의 참여권한 등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조직문화의 변화와 사회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일터괴롭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안전보건조항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 5년 이내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장 내 위험요소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다. 현대산업개발에서 1년이 되지 않은 사이 건물을 철거하다가 붕괴되고 건물을 세우다가 붕괴되는 일이 생겼다.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인과관계 추정에 따라 법인, 경영책임자 등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게 해야 한다. 사건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운 피해자들이 자신들이나 가족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였다.

2.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현행 제도 폐지

- 현장실습제도는 일반계고 학생들과 다른 교육내용이 필요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다며 만들어졌다. 이 제도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와 상관없이 현재 현장실습제도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취지 설명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 실습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현장감을 키운다는 교육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 이론으로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그 작업을 해보면서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점을 더 이해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문과목과 상관없는 사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가 다수다.

- 정규교과과정이 끝나지도 않은 시기에 조기 취업을 이유로 현장실습을 나가도록 권유하고 있는

제도다. 학생들은 배움의 일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터의 짝 노동력으로 현장실습과견이라는 애매한 위치의 노동자가 된다.

- 학교가 인력과견업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기간을 3학년 2학기 이후로 제한하고 업체 선정에도 더 기준을 세우고 감독도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평가를 취업률로만 매김으로 학생들을 내몰아가는 사냥개 같은 학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학년 2학기 이후에 학습을 위한 실습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노동자 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교육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도 실습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산안법, 산재보험법, 근기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제한 폐지

- 근로기준법은 ‘임금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임금근로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일부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근로자와 특수고용노동자 15개 직종을 포함하고 특례조항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사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다른 법들에 비해 적용하는 범위가 넓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담고 있고 그것이 사업주의 의무임을 전제하고 있다. 여러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가장 급선무는 적용범위다. 여전히 늘어가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라고 불리지 않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 중 일부 업종과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적용받을 수 있다.

- 산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피해자에 대한 보상, 재활과 복귀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 의미를 살리려면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마찬가지다.

-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비정규직을 더 배제하는 법, 더 위험에 내몰려 있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을 제외시키는 법이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될 수는 없다.

4. 노동인권을 정기 교과로, 과도기로 정기교육 배치

- 법과 제도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실제 그 법과 제도를 노동자들이 알지 못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일을 한 고 홍정운님은 물을 무서워했지만 해양관광일을 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원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실습을 나갔지만 그에게 맡겨진 일은 따개비를 따는 일이었고, 어떤 안전장비도 없었다. 현장실습생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사업주는 그에게 일을 지시했다. 홍정운님에게 누구도 “안 한다” “못한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그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 국민의 대다수는 일하는 노동자로 살아간다.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학교교육에 노동에 대한 인식,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는 교과과정이 현재는 없다. 학교에서부터 노동과 자신의 권리에 대해, 기업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토론하고 습득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 지금은 지역마다 학교마다 1년에 2시간 정도의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이며, 학교 외부강사가 일시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특강방식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노동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야 ‘거부’하고 ‘요구’하고 ‘참여’를 통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 교과과정 개편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그 과정까지는 외부특강 방식으로라도 노동인권교육의 정례화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교사들의 재교육과 교과재배치도 준비되어야 한다.

5.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 현실화, 정당한 작업중지·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업주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위험이 발생할 때 노동자들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여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에게 회사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실제로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중지하였던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질책을 받고 징계를 당하곤 한다. 작업을 중지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없애거나 판단하여 다시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데, 작업을 중지하면 발생하는 작업차질에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위험하다 판단하여 작업을 중지했지만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도 그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 2016년 7월, 사업장이 있는 공단에서 티오비스라는 화학물질이 유출되었고, 유출 직후 세종소방서와 경찰서가 출동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재난 통제를 시작했다. 반경 300미터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사고 공장과 가까웠던 사업장은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다. 직원들은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듣지 못한 채 악취를 맡았다. 노조에서 노동청 본청에 연락해 이런 사정을 알렸고 대전지청 근로감독관은 회사로 찾아와 대피를 권했지만 사측은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학물질 누출 후 대피했던 직원들에게 ‘사업장 무단이탈’, ‘복귀 명령 거부’ 딱지를 붙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던 일도 있다.

- 위험한데도 대피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지시는 존재하고, 작업중지와 작업거부를 하는 노동자는 징계를 당한다.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 작업중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노동자들의 판단을 온전히 인정할 때 일터는 더 안전하고 죽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지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위험을 막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가 아니라 그런 노동자를 징계하는 회사다.

- 정당한 작업중지와 거부권 행사를 빌미로 노동자를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피해자 권리보장, 참여권 보장

-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죽고 있다는 통계는 크게 변화가 없다. 목숨을 잃은 2,400명의 노동자의 가족, 동료들은 그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회사는 재해발생 현장을 가리고, 물질을 없애고 청소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한다.

-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검증하는 절차에도 노동자들과 유족들은 참여할 권한이 없다. 누구보다 진실을 알고 싶은 이들이 유족이고,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자주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노조·동료들이지만 그들은 사건조사 과정에 참가를 제지당한다. 모든 증거는 회사가 쥐고 있는데 회사는 사건발생에 관련된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는다. 노동부, 경찰, 검찰의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사업장 내부 정보 유출로 내몰린다.

- 회사는 산재피해가족들에게 보상만을 바라는 사람들 취급하며 정당한 보상요구를 위축시키고 트라우마로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치료과정은 퇴사를 종용하는 절차가 되어버린다.

- 현재는 산재피해가족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재해조사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한다. 정확한 조사과정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그 조사과정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도록 명시되어야 한다. 가장 상황을 잘 아는 이들을 빼놓고 사건을 조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7.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정기 실태조사와 점검

- 학생 신분의 현장실습이라고 하면 다들 특성화고 산업체파견현장실습을 우선 떠올리기 마련이다. 특성화고 산업체 파견현장실습제도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실태가 확인되고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에 비해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대중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열정페이’ 문제점으로는 얘기되고 있다. 열정페이라는 말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제기들에 몇 가지 제도를 개선하여 표준현장실습 학기제가 도입됐다.

- 기업체에 출근해서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특성화고 산업체과견현장실습과 동일한 방식이다. 기존에 실습이라는 이유로, 배운다는 이유로 일을 하고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기에 임금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 학습을 위한 조건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사회적 관심이 덜한 만큼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점검되어야 한다. 제도는 좋은데 운영의 문제인지, 제도 자체가 가진 문제가 있는지 등도 그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또 하나의 노동력 착취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이 행정기관, 지자체, 학교, 시민사회 단체 합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각 시민단체 제안 생명안전 의제
.....

생명안전 시민넷의 20대 대선 의제 제안

.....

생명안전 시민넷

■ 20대 대선 공약 반영 및 차기 정부 제안 과제

1.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내용은 발제문 참조)
2. 피해자 인권 보장과 지원체계 구축 (피해자 인권 보장 및 지원법 제정)
3. 독립적 상설적 조사기구 설치 (중대 안전사고 국가조사위원회법 제정)
4. 안전영향평가 실시 (안전영향평가법 제정)

* 주요 의제 (내용은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내용 참조)

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5인 미만 포함, 인과추정제 도입 등)
6. 산업기술보호법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7. 산재보험 개혁
8. 기후위기 대책 수립 :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시스템 전면 개선 등
(공공의료 확대,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확충, 인권에 기반한 감염병 정책 시행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탄소성장법 폐기와 기후정의법 제정,
재생에너지 보급, 탈석탄, 신공항 중단 등

9. 라이더보호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배달 기사와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요건을 적용하여 등록제로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며,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여 안전한 배달을 위한 적절한 배달료를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달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의제 1]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내용은 발제문 참조)

[의제 2] 피해자 인권 보장과 지원체계 구축 (피해자 인권 보장 및 지원법 제정)

1. 목적

재난 및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보장과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개인 및 가족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의 회복을 돕고자 함

2. 필요성

1) 지원체계 미비

- 정부나 수습 당국은 피해자 가족에게 가장 먼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언론 대응이나 조속한 수습 중심의 업무 처리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이 방치
- 피해자들의 사고 수습과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 미비

2) 사고 발생 경위, 구조 수습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미비와 왜곡 허위 정보 전달

- 참사 현장의 구조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 허위, 왜곡 정보 전달
- 피해자 잘못으로 책임전가

3) 비인도적 처우와 2차 피해

- 구조 및 수습 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체계 부재 등 피해 가족에 대한 비인도적인 상황
- 모욕과 2차 피해에 쉽게 노출
- 언론 취재 및 일반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무분별한 노출

* 4·16 세월호참사 등에서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지 못하고, 그 구조 및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은 가족들의 생사 여부 및 구조인력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음. 또한 잘못된 정보가 아무런 여과 없이 언론에 제공되어 국민들의 불신도 가중되었음. 이와 같이 재난상황에서 공동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피해자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책무를 명시함.

3. 주요 내용

1) 기본이념 :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기본이념으로 명시

2) 피해자의 법률적 규정

- 현재의 안전관련법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이재민, 구호대상
- 피해자의 범위 : 사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입어 치료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제외되지 않도록 함

3) 피해자 정책 패러다임 전환

- 관리 중심·공급자 중심 → 국민 중심·피해자 중심·수요자 중심
- 사고 피해자, 이해관계자 →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사람, 참여자, 안전운동의 한 주체

4) 국가와 기업의 책무

5) 아래의 피해자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내용

-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받을 권리(구조권)
- 안전사고의 발생 경위·구조 및 수습 과정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알 권리)
-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각호를 포함하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와 지원 내용 (인도적 처우권)

- 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② 언론 취재 및 일반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③ 사망자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 ④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의 수색을 요구할 권리
 - ⑤ 유품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 ⑥ 다른 사람들과 회합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 ⑦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치유휴직 및 재취업지원·고용유지지원·이동지원·주거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와 지원 내용
 - ⑧ 신속하고 적정한 사고 수습을 요구할 권리
 - ⑨ 사고 원인과 국가 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
 - ⑩ 배·보상을 받을 권리
 - ⑪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후속 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 ⑫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 ⑬ 기타 이 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 * 재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같은 지원계획의 수립 시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실천하고자 함.

6) 피해자 참여 : 배제가 아닌 안전사회건설의 한 주체로 인정

7) 추모와 공동체 회복

8) 개인 정보 누설 금지와 명예의 보호, 모욕 금지 등

9) 벌칙

[의제 3] 독립적 상설적 조사기구 설치 (가칭 '중대 안전사고 국가조사위원회'법 제정)

1. 목적

중대안전 사고의 구조적 원인 규명,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정성, 재발 방지책 마련, 재난 대응 태세 점검 등을 통해 환류와 축적 체계를 만들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함

2. 필요성

- 1) 유사 사고의 지속적 재발
- 2) 사고 관리와 조기 수습에 초점. 원인조사와 근본적 대책 마련보다 책임규명과 처분에 치중
- 3) 수사나 일방적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비전문성, 은폐, 가해자 내지 책임기관 주체의 조사: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의 어려움,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
- 4) 여러 부처 관련 또는 소관 부처가 불분명한 경우 총괄하여 조사하는 것이 어렵고 자칫 책임회피 우려
- 5) 기존의 조사 결과 및 권고 내용이 이행되지 않음(보고서로만 끝남)
- 6) 조사 결과가 현장과 유관기관 간 환류되어 실제 개선의 시스템 필요
- 7)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으로 예방 대책의 근간 마련
- 8) 재난 대응태세 점검(재난 등에 대응하는 기관의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주요 내용

- 1) 독립성, 신뢰성

- 2) 조직, 구성, 조사의 대상 및 운영
 소속, 위원회, 사무처, 조사 대상과 방식 등

- 3)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조사결과와 정책 및 제도 개선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방안 마련 (조치계획 및 결과 보고)

[의제 4] 안전영향평가 실시(안전영향평가법 제정)

1. 목적

정책이나 주요 사업 시행 시 안전과 생명에 대한 영향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보호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필요성

- 1)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정의 완화, 안전을 무시한 정책과 제도 등으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제공

- 2) 각종 정책을 마련할 때 규제완화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정책이 생산되도록 하여야 함. 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수단

3. 주요 내용

-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제정하거나 수립할 때에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시책에 있어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거나 정책의 변경

이 있는 경우에도 안전영향평가를 의무화

2) 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참조 비교 입법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절차와 방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음

■ 「문화기본법」

제 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상, 절차, 방법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

제 41조(환경영향평가) ①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별도의 법률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총 75조로 이루어져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 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 별도의 법률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총 18조로 구성되어 있음

각 시민단체 제안 생명안전 의제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의 20대 대선 의제 제안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 20대 대선 공약 반영 및 차기 정부 제안 과제

1.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2. 태아산재법 확대 및 안전보건조치 마련
3. 직업병 판례 법제화 및 산재보험 개혁

[의제1] 작업장 위험에 대한 알 권리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 8월 국회가 통과시킨 산업기술보호법에는 국민의 생명·건강권과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①“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예외 없는 비공개를 명시한 제9조의2, ②“산업기술 포함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공개를 금지한 제14조8호, ③ 비밀유지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제34조10호

○ 위 독소조항들은 사실상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소송 등에서 제기했으나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들이 명문화된 것. 국회 안에서 관련 법률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법률안, 회의록 등)에도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 공개 문제가 입법 제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 그래서 시민사회는 2019년 11월부터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명명하며 헌법소송을 제기하고 재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음. 산업보건학회를 비롯한 4개의 환경안전보건 관련 학회에서 우려를 담아 재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함. 여러 언론들의 심층보도로 문제가 알려진 후에 법안에 찬성했던 국회의원 15명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담아 연서명을 발표함.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문제조항 3개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음. 법 개정을 자임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미루는 동안, 민주당 당대표 송영길 의원 등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추진하여 2022년 1월 11일에 국회를 통과함. 이 법안에는 산기법 독소조항을 담은 “전략기술 포함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공개를 금지한 제15조8호가 포함되어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 높아짐.

2. 요구

1)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 ①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예외 없는 비공개를 명시한 제9조의2 삭제
- ② “산업기술 포함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공개를 금지한 제14조8호 삭제
- ③ 비밀유지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제34조10호 삭제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문제조항 삭제

- “전략기술 포함 정보”의 취득 목적 외 사용·공개를 금지한 제15조8호 삭제

[의제2] 태아산재법 확대 및 안전보건조치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화학물질(의약품), 교대근무, 스트레스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근무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집단 태아산재 발생. 2009년 임신 간호사 15명 중 4명 태아 심장 장애, 5명 유산 경험.
- 2012년 12월 11일 심장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간호사) 4명 산재신청.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건강손상만을 의미하고 태아의 건강손상은 대상이 아니라며 불승인(한편 유산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의 건강손상으로 보아 산재 승인).
- 2020년 4월 5일 대법원(2016두41071) 모성과 태아의 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태아의 건강손상은 유산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결.
- 2021년 5월 20일 그간 생식독성 피해 제보가 있었던 전자산업에서 3명의 노동자(어머니)가 태아의 건강손상(단신장 IGA신증 / 선천성거대결장 / 단신장 식도기형 등)에 대해 산재신청 진행.
- 공공운수노조(제주의료원)와 반올림(전자산업)은 태아산재법의 빠른 제정을 요구하면서, 내용적으로는 ① 과거 피해자 소급적용, ② 아버지 태아산재 포함, ③ 다양한 보험급여 적용, ④ 다양한 유해요인 포괄을 요구하였음.
- 2021년 12월 1일 아버지(전자산업 노동자)가 처음으로 태아의 건강손상(차지중후군)에 대해 산재신청 진행.
- 2021년 12월 9일 태아산재법(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법이 제정된 것과 ① 과거 피해자 소급적용(개정법 시행인 1년 이내 산재신청)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일임. 그러나 ② 아버지 태아산재는 산재신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았고, ③ 휴업급여, 부모돌봄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이 제외되면서 보험급여 또한 부족한 상황임.
- 2021년 12월 9일 태아산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법이 제정된 것과 ① 과거 피해자 소급적용(개정법 시행인 1년 이내 산재신청)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일임. 그러나 ②

아버지 태아산재는 산재신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았고, ③ 휴업급여, 부모돌봄휴업급여, 유족급여 등이 제외되면서 보험급여 또한 부족한 상황임.

○ 한편 태아산재법 제정은 생식독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일 뿐임. 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산재신청을 유도해야 함. 그리고 ②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중요함.

2. 요구

- 1) 태아산재법 확대 (아버지 태아산재 포함,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 추가)
- 2) 태아산재 실태파악 및 산재신청 적극적 홍보
- 3) 태아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마련 (사업주 생식독성물질 사용고지의무 부여, 노동자 생식독성으로부터의 보호 요구권 부여, 생식독성 및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 관리 확대 등)

[의제3] 직업병 판례 법제화 및 산재보험 개혁

1. 현황 및 문제점

○ 2017년 대법원 판결(2017. 8. 29. 선고, 2015두3867)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러 유해요소의 복합적, 누적적 작용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등과 같이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했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아 실제 산재판정에서 효력이 제한적임.

○ 위 판결 영향으로 2018 노동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8개 산재인정 상병에 대해 동일(유사)공정에 대한 역학조사 생략 지침 등 산재처리절차 간소화 지침을 제시함. 그러나 세부공정 중심의 너무도 협소한 기준으로 인해 실효성이 거의 없었음. 때문에 산재신청 뒤에 1~3년씩 소요되는 지나치게 긴 역학조사 기간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긴 조사기간으로 인해 암 투병 노동자들이 산재결과도 못 보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지금도 발생.

○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음.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사로부터 취업불가능 소견을 받아야 하는데, 산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사들의 협소한 견해로 인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건강보험과 달리 피해노동자가 일일이 증명을 마련하여 신청해야 함. 병든 노동자가 감당하기에는 매우 불친절한 제도로 개선이 시급함.

○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산재보험을 보편적인 사회보험이 되도록 적용을 확대해야 함.

2. 요구

- 1) 대법원 직업병 판례를 뒷받침할 법제도 마련
- 2)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 확대 적용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화
- 3) 보장성을 강화하는 지급기준 마련
- 4) 불친절한 산재보험제도 건강보험처럼 개선
- 5) 산재보험을 보편적 사회보험으로

.....
2022탈핵대선연대 정책요구안 :

.....
정의로운 전환, 안전한 세상, 탈핵을
.....
앞당기자!
.....

2022탈핵대선연대

1.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갈망은 우리사회가 탈핵이라는 정책방향을 도출하게 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탈핵 에너지정책은 혼선과 갈등을 낳고 있다. 집권 당시 탈핵을 표방했던 정부였으나 핵발전소 수출정책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사업 등 '탈핵'과 모순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단하기로 한 신규핵발전소를 재추진하려는 핵산업계의 움직임과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시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발전의 조기 폐로를 법률로 규율하여, 핵발전이 사회적 수명을 도입하여 설계수명과 관계없이 조기 폐쇄 로드맵 마련을 명문화해야 한다.

○ 탈핵기본법 제정

▲국가에너지정책 목표에 탈핵 명시 ▲대통령 소속 '탈핵 기구' 설치 ▲신규 핵발전 (소형모듈원자로 및 연구개발 포함) 및 설계 수명연장 금지 ▲핵발전소 조기 폐쇄 (조기 탈핵 로드맵 제시)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 폐로와 폐로 연구 지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핵발전소 수출 및 핵폐기물 반출 금지 ▲국제 및 동북아시아의 탈핵과 비핵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은 탈핵기본법을 제정한다.

○ 원자력진흥법 폐지

탈핵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핵관련 연구와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 원자력진흥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과 연구, 원자력수출 촉진과 지원 등은 탈핵 로드맵에 따라 폐기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

2.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고준위핵폐기물은 수십 년간 위협하게 발전소 내 방치되어 왔고 핵폐기물 처분 문제는 대표적인 지역 현안이자 국민적 갈등 사안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한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 역시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배제된 채 공론 없는 공론, 밀실 공론화로 전략,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갈등만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공론화라는 미명하에 포화가 압박한 경주지역 맥스터(대용량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을 강행하며, 핵발전의 안정적 운영,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핵폐기물 문제를 핵산업 진흥 부처가 주관하면서 핵폐기물 최소화 및 책임 있는 처분보다는 포화상태에 이른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초점을 두고 풀어가려 한 탓이다.

○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 폐기 및 원점 재검토

줄속·엠티리·조작 공론화로 진행하여 제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은 폐기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진흥부서인 산업부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적인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담당하게 해야 한다. 독립적 행정기구가 주관하여 지역주민, 시민사회, 관련전문가 등을 포함해 함께 숙의성,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한 전 국민적 공론 과정을 설계·추진하

여 관리정책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 재처리 금지 및 국내 처분 원칙, 관련 연구 및 예산 배정 금지

고준위핵폐기물은 재처리가 아닌 자국 내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가 발생시킨 핵폐기물을 타국이 아닌 자국 내 처분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발생자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한다.

사고위험과 핵확산 우려, 시험 및 운영과정에서 방사선 방출로 노동자와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용후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과 예산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3. 핵발전 규제 강화

한국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54개의 핵발전 안전과제를 도출했으나 폭발을 방지할 수소제거장치 안전성의 결함이 드러났으며, 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도 월성1호기만 설치한 후 다시 철거하는 등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더욱이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는 아직 방법론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위상·역할을 개편하고 일상적으로 핵발전 규제 강화와 더불어 테러 대비, 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전환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검사 기능을 위원회로 일원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와 관련된 인·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지만, 실제 안전을 이유로 '가동중지', '폐로' 등을 결정하는 것은 청와대 등의 정치적 판단과 눈치를 보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의 사례처럼, 정치적, 기술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 및 재정의 독립적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핵발전소의 '안전' 심사·검증을 통해 핵발전소의 '운영'에 초점을 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운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운전을 제재하는 '규제'에 초점을 두는 원자력규제위원회로의 책무와 권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문성은 부재한 채 핵발전 진흥과 R&D 중심으로 접근하는 기존의 과기부, 산업부 출신의 행정관료가 중심이 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독임제 구조가 아닌 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현행 비상임 7명, 상임 2명)을 확대·운영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검사 기능을 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안전연구 중심으로 기능 전환

핵산업의 메카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진흥 R&D에서 안전 등의 R&D로 연구 방향을 전환·개혁하고, 위험한 실험을 비롯해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규제가 가능한 독립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체/액체 방사성 물질 배출 기준 및 규제 강화

핵발전소 운영과정에서 공기와 바다로 기체·액체 방사성 물질이 일상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배출 기준 이하라면, 몇 번이고 희석시켜 계속 배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 영향과 피해, 먹거리의 오염 등이 계속 문제제기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량 규제 기준을 마련하였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출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할 것이다.

○ 기후위기에 따른 핵발전소 안전성 영향 평가 마련

2020년 여름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 영향으로 국내 핵발전소 6기의 소외전원을 상실하는 사고가 있었다. 기후위기로 인해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태풍,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핵발전소의 사고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새로운 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핵발전소 안전성을 새롭게 평가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및 중대사고 방재대책 마련

우리나라 핵발전소 부지에 발전소가 6기 이상 밀집해 있으나 단일호기 기준으로 안전성 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다수호기 사고를 계기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평가 방법만 연구하고 있으며, 중대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에 따른 방사능방재계획,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역시 중대사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기초로 확대(최소 30km이상) 해야 한다.

4. 지역 권한 확대, 시민 참여 제도화

핵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하지만, 현

행 법·제도에서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방정부는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 조사, 재가동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현재 중앙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 지역에 원자력규제 권한 배분, '재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

핵발전소 사건·사고 시 인근 지역정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관련 정보 요구 시 한수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공해야 하며, 관계자 출석 및 설명 등을 요구할 때 부응토록 해야 한다.

더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결정과 별개로 인근 기초·광역 정부에게 재가동 동의권, 가동중지(요구)권 등을 부여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역 권한의 배분을 법·제도적으로 명문화한다.

○ 지역 및 시민사회의 참여 법제화

지방정부 역시 권한이 주어졌을 때, 행정과 의회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지 말고, 실제 해당 지역주민들의 참여하에 그 권한이 온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법과 조례 등을 통해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각 지역별 핵시설 및 핵발전소의 감시·조사·규제 등의 실질적인 권한이 부재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독립성(정치, 인사, 재정 등), 전문성(기술, 정책 등) 등을 강화하고, 감시·조사·규제 권한 등을 부여할 수 있는 법률·행정·재정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5. 방사선 영향·피해 대책 마련

핵발전은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운영과정에서도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핵발전소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주민들, 나아가 시민들 역시 농·수·축산물 등을 통해 그 영향과 피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방사선 영향·피해 관련 민원과 소송이 반복하여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행정적 체계는 그 영향과 피해를 당사자들이 입증해야 보상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체계이다. 오히려 방사선 영향의 안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오염 발생자가 그 책임과 부담을 져야 한다. 관련 오염을 조사하고, 보상·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 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 확대

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은 방사선방호를 위해 사업자가 일정 범위의 부지를 확보해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는 구역이다. 현재 거주제한구역은 발전소에 따라 560미터, 700미터, 914미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발전소 기술을 도입한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규정 등을 준용한 것인데, 이 나라들은 핵발전소 인근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지 않으며, 주변 여건이 한국과 다르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자기준을 마련하여 거주제한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 이주대책 마련과 법제화

핵발전소 최인접지역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건강권 및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특히 경주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은 노시료 검사에서 조사자의 100%가 삼중수소에 피폭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월성핵발전소 지역을 포함해 대부분의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핵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해야 한다.

○ 핵발전소 인근 주민(갑상선암 공동소송 등) 건강영향 조사 및 대책 마련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건강 이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한수원은 법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입증을 요구하며 다투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시 관련 조사와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영향·피해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적극적 대책 마련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 방사선 노동자 선량한도 인하, 방사선 산재 인정 범위 확대, 피폭 노동자 국가관리체계 마련

한국의 방사선 피폭선량 한도는 일반인의 경우 연간 1mSv, 방사선 작업 종사자(핵발전소 노동자, 비파괴검사, 병원 방사선 업무 종사자 등)는 5년간 100mSv를 기본적으로 적용(특정 년도는 연간 50mSv를 허용)하고 있고, 수시 출입자(운반종사자 등)는 연간 6mSv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차등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피폭선량 중 가장 낮은 선량인 수시출입자 기준(6mSv)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향후 피폭선량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핵발전소 방사선 관련 질환 발병 시, 사업자가 모든 정보 등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을 묻기보다 사업자가 반증하지 못할 경우 방사선 관련 질환으로 추정토록 해야 한다. 더불어, 사업자에 의해 노동자들의 방사선 측정 방식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가 노동자들의 피폭 관리를

체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6.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2023년부터 방사성 오염수를 낮은 농도로 희석해 하루 500톤씩 1km의 해저터널을 통해서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화를 거쳤다고 하는 오염수에는 기준치의 1만 4천배를 초과하는 스트론튬을 비롯하여, 삼중수소는 40배, 세슘137은 9배까지 검출되고 있다. 계획대로 방류된다면 저서생태계, 해양생태계는 큰 방사능 피해를 입는다. 먹이사슬을 타고 바다 생물 체내에 축적된 방사능이 우리와 전 세계의 식탁을 위협함은 물론이다. 이미 여러 기관을 통해 발표된 방사성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은 방류 후 수백일 내 우리 해역도 오염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방류저지를 위한 실질적 외교 활동 전개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모니터링을 넘어선 실질적인 해양방류를 막는 외교적 활동을 전개하여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을 포기하고 장기보관 정책을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7. 신울진-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

밀양765kV 송전탑 건설은 신고리 핵발전소 3·4호기의 전기 송전을 위해 밀양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침해로 넘어 마을공동체를 파괴하고 경찰 폭력은 송전탑 건설지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현재 한국전력은 울진-가평 500kV HVDC 초고압 직류송전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송전탑은 애초에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나 이 사업은 폐기된 사업으로 송전선을 추가 건설해야 할 사유가 사라진 상태다. 에너지전환에 따라 송변전 시설에 대한 전면적 검토 역시 필요하다.

○ 신울진-신가평 500kV 초고압송전탑 건설 추진 중단

한국전력은 국가전력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되자 지금은 석탄발전과 재생에너지 송변전 시설을 위한 송전탑 건설이라고 주장하며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이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봉화, 평창, 횡성, 홍천의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구성해 싸우고 있다.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를 예고하는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탑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개정

한국전력은 ‘특수사업보상내규’에 근거한 임의적 ‘금전 지급’을 통해 마을 주민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전의 ‘특수사업보상내규’를 송주법 체제에 편입시킴으로써 임의적인 금전 지급을 제한하고, 명확한 법적 규정을 통해 지역 및 마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

○ 밀양·청도 등 송전탑 건설지역 마을공동체 파괴 진상조사

경찰청은 2019년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정부 및 한전에 게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초래한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및 피해주민에 대한 회복방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와 한전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진상 조사와 피해 회복,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각 시민단체 제안 생명안전 의제
.....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코로나19 방역체계 마련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1. 목적

-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을 강화
- 집회 시위 등 코로나19로 인해 침해받은 기본권 회복
- 평등한 백신 접종 보장 정책과 방역패스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 해소
-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사회적 소수자의 의료접근권 보장
- 사망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 절차 필요, 장례 절차 개선

2. 필요성

1) 실태

- 감염에 더욱 취약했던 시설의 장애인, 요양보호시설의 노인과 약자, 돌봄 종사자,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집단거주 형태의 기숙사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이주노동자, 수용자, 빈곤

계층 등 일상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던 이들은 감염병에 더욱 취약했고, 그 피해 역시도 컸음. 피해와 위기가 심각했다면, 감염이 확산되는 조건을 바꾸고, 시급한 지원정책을 시행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정부의 정책은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조치를 넘어서지 못했음.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이 놓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음.

- 감염병의 공포와 위기는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인권을 유예하거나 후퇴시키는 근거가 되었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과도한 정보 수집의 문제, 전자팔찌(안심 밴드)도입,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 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가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이루어졌음. 특히,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은 오히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말하고자 하는 이들의 입을 막는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음.

- 백신 접종을 하고 싶어도 접종받지 못하는 홈리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존재. 현재와 같은 신분증 식별로 백신 접종은 신분증이 없는 홈리스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음.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접종이 어려움. 임시번호 발급 등을 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

- 제도의 공백으로 접종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기저질환이나 백신 공포로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현실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임. 방역패스가 확대되어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법이나 공공기관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겪어야 함. 청소년까지 백신패스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여 학습권 박탈이나 내부의 차별을 강화시킬 수 있어 사회적 우려가 큼.

-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발표 때부터 현재 코로나 재확산인 상황에서도 재택치료 중심의 응급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하지 않아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사망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 최근 5주간(10월 31일~12월 4일)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진 코로나19 환자가 29명에 달하며 수도권 병상대기환자가 1,000명이 넘고 있음. 심지어 재택치료 중 사망자는 별도의 통계로 집계되고 있지 않음. 재택치료 중심의 응급의료대응체계는 주거가 불안정한 홈리스나 이주노동자, 가난한 사람들과 혼자 일상생활도 벅찬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에게는 사실상 의료 방치를 의미하는 것임. 또한 장애인 확진자의 경우 활동지원을 하기로 정부 지침이 만들어졌으나 현장에서는 작동하고 있지 않음. 위험한 만큼 활동지원인에 대한 추가 수당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또한 홈

리스의 경우 재택치료가 불가피할 경우 주거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공공병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공공병상을 확보하는 방식이 기존 공공병원을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되면서 이들이 다른 질환에 걸려도 치료받을 수 없어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의료공백이 발생함. 위급한 상황이지만 민간대형병원 병상 동원 명령 병상은 3%에 그침.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병원 확보에 나섰다고 하지만 획기적인 변화는 아님.

- 코로나19가 확산 되면서 위중증 비율이 높아지고, 사망자의 수도 많아지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장례 절차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가족의 임종을 지키거나 마지막 장례를 제대로 치루기 어려운 상황. 인간의 존엄은 생존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세상을 떠난 후 추모와 애도의 과정에 걸쳐져 있음. 희생자의 추모와 애도를 위한 과정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2) 문제점

- 장애인,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는 코호트격리,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을 때는 현장을 섰다운하는 것으로, 성소수자나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확산했을 때는 정체성을 감염의 요인으로 지목. 감염에 취약한 3밀(밀집, 밀접, 밀폐) 환경에 놓인 집단거주 시설 이용자,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노동·주거 환경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

- 긴급시기 제한된 권리와 인권침해는 일상이 회복되어도 원점으로 돌아오기 어려움. 또 다른 위기가 찾아 왔을 시 제한과 후퇴는 더욱 쉬워질 수 있음. 국제인권기구들도 코로나19 회복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권의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정책만을 시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차별과 불평등이 확산되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의 건강권과 기본적인 권리가 후퇴되고 있음.

-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방역정책으로 인해 코로나19 초기 감염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낙인이 되거나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었음. 방역수칙 위반자를 신고하여 포상하는 제도, 구상권 청구와 고발 조치, 처벌 중심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엄벌주의는 두려움과 차별을 확산하는 데 일조하였음.

- 백신 접종은 의무가 아니라고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였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백신 의무화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백신 미접종자에게 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회적 차별과 낙인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큼. 심지어 마트, 백화점 등 일부 시설은 제외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기준이 모호해 중소기업·상인들조차도 차별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음.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발언처럼 코로나19 백신 강제 접종은 용납되지 않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병상 확보와 응급의료대응체계 마련은 소홀한 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백신패스는 필요성과 비례성, 비차별 원칙에 맞지 않음. 방역패스는 백신 외에 PCR 음성결과도 포함했으나 검사 인원이 몰리는 상황에서 대기시간을 낼 수 없는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사실상 검사조차도 불가능.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백신패스 정책이 강화된 것이며, 일상생활 공간에서 백신 접종을 확인하는 곳이 대부분임.

- 응급대응의료체계는 그야말로 응급대응의료체계여야 함. 그러나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의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택 중심의 의료체계를 고수할 경우, 삶의 조건이나 건강상태가 나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는 사실상 치료 포기를 강요하는 것임. 감염병예방법 41조에서도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코로나19의 특성상 긴급하게 증상이 위중해질 수도 있음. 고령자와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재택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건강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임. 또한 쪽방촌이나 고시원, 이주노동자 기숙사 등 비적정 주거상황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밀집해 있는 사람들이 집단감염되고 있음.

- 공공병원의 기능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가 전부가 아님. 의료급여 수급자나 이주노동자, 노인 등이 이용하는 공공병원의 기능을 도외시하는 조치는 의료공백을 심화시킴. 이는 지난 2년에 걸친 코로나19 시기에 반드시 만들어야 했던 공공의료체계의 구축을 등한시한 결과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임.

3) 기대효과

-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은 코로나19 상황에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줄여나가고 권리를 보호.
- 현재 인권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마련해놓는다면, 또 다른 재난이 찾아왔을 시에도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

- 감염, 확진된 사람뿐 아니라 모두가 코로나19 재난을 겪고 있음. 이를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것이 필요. 추모와 애도, 사회적 환기를 통해 시민들과 연대 강화.
- 홈리스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백신불평등으로 인한 감염확산을 막을 수 있음.
-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방역패스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이 줄어들 수 있음.
- 재택 중심의 응급의료대응체계를 수정·보완한다면 장애인, 홈리스, 고시원 등 부적정주거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집단감염을 줄일 수 있음.
- 사립대형병원들의 병상 10~20%를 비우는 등 적극적으로 공공병상 확보를 할 경우, 위중증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불평등 완화.
- 공공병원을 늘리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의료공백을 줄일 수 있음.

3. 현행 제도의 문제

-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의 현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와 대책의 부재
- 취약한 감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부재. 검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 처벌 중심, 지자체 일방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감염병 예방법
-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함. 신분 식별 중심의 백신 접종책의 개선, 부적정주거에 놓인 사람들에게 대한 백신 접종과 홈리스 등에게 임시주거 지원.
- 백신패스 기본권 제한에 있어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준해야 함. 백신패스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로 권장과 권유할 사항이지 강요되어서는 안 됨.
- 재택 중심의 응급의료대응체계는 평등한 치료접근권을 막는 것임, 감염병예방법 6조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 모든 국민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 공공병원의 부족과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도 민간대형병원의 공공병상 동원령을 최소화하며 국가책임을 소홀히 함.

4. 주요 내용

-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을 강화

: 재난시기 사회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감염에 취약한 주거, 노동환경 등 개선. 의료 및 기본적인 방역 및 지원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 수립.

: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을 강화를 위해 방역당국과 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 구축.

- 집회 시위 등 코로나19로 인해 침해받은 기본권 회복

: 감염병 예방법 개정

: 정부 방역 및 지원정책 수립 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 마련.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 평등한 백신 접종 정책, 백신패스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 해소

: 홈리스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지역별 백신 접종책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시적 체류허가제 도입, 홈리스에 대한 임시주거지원책 확대.

: 차별과 낙인을 조장하는 백신패스 정책의 전면 재고.

-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사회적 소수자의 의료접근권 보장

: 재택치료 중심의 응급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하는 것 필요. 장애인 가족이 확진자일 경우, 비감염 장애인에 대한 돌봄지원책, 홈리스 확진자 및 밀접접촉 홈리스들에게 신속히 임시생활시설 등 자가격리처 제공 등 소수자 보호대책 필요.

: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공공병원 증설과 민간대형병원의 공공병상 동원 확대.

- 사망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 절차 필요. 장례 절차 개선

: 국가적인 추모와 애도의 과정을 마련하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추모와 애도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장례 절차 개선.

